

종목단체 2025년 귀속 결산공시 교육

양동명 회계사 T : 010-3064-1658, E : admin@chansolution.com

임정근 세무사 T : 010-9178-5137, E : carrot@aplustax.co.kr



2026.04.10

I. 공익법인 기본내용



1. 공익법인 통합재무제표

제3조(보고실체)

이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공익법인 전체를 하나의 보고실체로 하여 작성한다.

□ 공익법인을 하나의 보고실체로 보아 재무제표를 작성하되,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공익법인 재무제표를 다시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각각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공익목적사업구분과 기타사업부문의 구분은 **공익법인 정관상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결정**한다.

- 공익법인에서 여러 가지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활동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해야 하며, 이때 각 사업활동이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목적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사례1):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기본순자산인 건물의 임대사업을 통해 장학금의 재원마련을 하는 경우에는 장학사업은 공익목적사업부문, 임대사업은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한다.

사례2): 종목홍보목적으로 홍보수익을 받는 경우, 해당 홍보관련 수익이 수익사업이기는 하나, 정관에 기재된 고유목적이기 때문에 공익목적사업으로 구분이 된다. (수익사업이 반드시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되지는 않는다.)

사례3): 단순 예치하는 예금과 매도가능증권은 고유목적사업으로 구분함.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금융자산은 기타사업으로 구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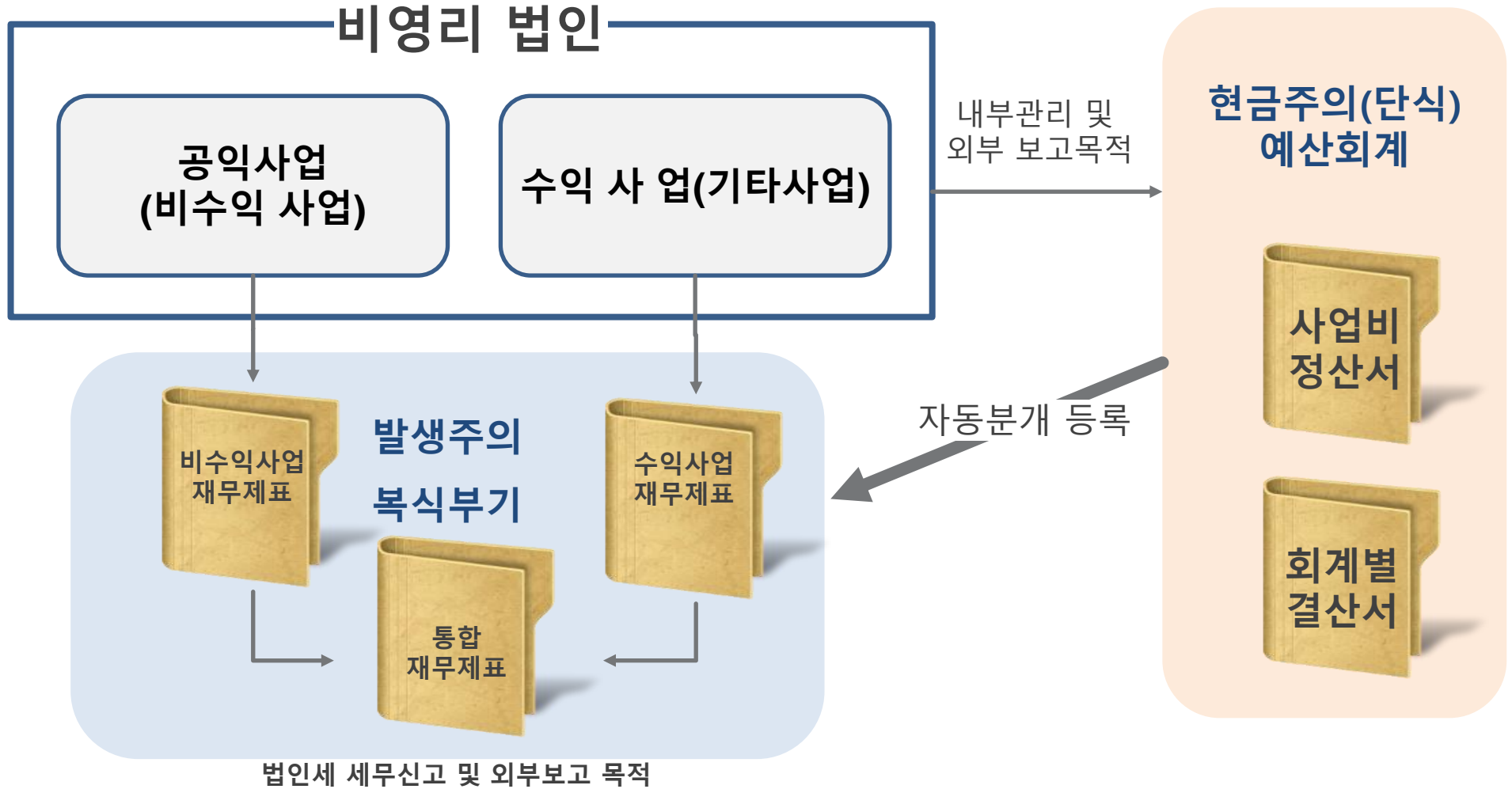
공익법인회계기준 - 정관에 따라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법인세법기준	비수익사업	수익사업	수익사업

2. 구분회계

- 구분회계는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관리되어야함
- 수익회계는 목적에 따라 공익목적과 기타사업이 될수 있음(공익목적사업은 기타사업이 될수 없음)
- 예산회계 특성상 세외가 나올 수 있음. 세외는 예산회계결산시에는 제외되고, 복식부기에는 포함되는 특징이 있음. 세외회계는 지출은 되었으나 실제로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것으로, 예를 들어, 예수금, 카드결제대금, 퇴직금내부적립액이 있음 (세외는 현금주의회계에서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볼수 있음)

회계코드	회계_구분회계명	FS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수익회계	지정기부금	미사용
30	기금	공익목적사업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0	자체	공익목적사업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4	자체(수익)	기타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0	기금(이월)	공익목적사업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0	기타	공익목적사업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9	세외	공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수익사업(공익법인)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게 필요한 회계관리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의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감면

전입한도 : 아래의 수익사업금액을 한도로 설정가능

- 이자소득&배당소득: 100%
- 체육단체의 경우 국가대표의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 100% (2028년12월31일까지 적용)**
- 일반 수익사업의 소득: 50%

*) 체육단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체육단체 (대한체육회 및 가맹종목단체)

소득 유형	근거	손금산입률
이자소득 (예금이자 등)	법인세법 §29①-1호	100%
배당소득 (투자신탁 이익 포함)	법인세법 §29①-2호	100%
국가대표 관련 수익사업 소득	조특법 §74①-6호 특례	100%
일반 수익사업 소득	법인세법 §29①-3호 원칙	50%

준비금 지출

- 비수익사업에 준비금 사용내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을 설정하고 지출내역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수익	비용	소득금액
홍보수익	100,000,000	15,000,000	85,000,000
이자수익	96,212,333		96,212,333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할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당기비용)을 계상하면서 상대계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채)을 인식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지 않고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이 규정은 선택사항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인세법」상 신고조정으로 처리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고조정은 잉여금 처분을 통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므로 이에 대한 보충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석으로 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공해야 한다.

결산조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 수익이 모두 기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경우)

A공익법인은 수익사업의 소득금액 ₩1,000,000 이 발생하였다. A공익법인은 해당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였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

- 기타사업부문 -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1,000,000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000

[재무상태표]

과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부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0	1,000,000

[운영성과표]

과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0	1,000,000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익목적사업부문으로 전출

- 기타사업부문 -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

- 공익목적사업부문 -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000

[재무상태표]

과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부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000	0

[운영성과표]

과목	공익목적사업
사업비용	XXX
사업수행비용	1,000,0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1,000,000

3) 기타사업부문에서 전입받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 공익목적사업부문 -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000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1,000,000

사업수행비용 1,000,000 현금 및 현금성자산 1,000,000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신고조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 수익이 모두 기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경우)

A공익법인은 수익사업의 소득금액 ₩1,000,000 이 발생하였다. A공익법인은 해당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였다.

< 2x18. 12. 31 회계연도 말 >

- 분개없음 -

< 2x19. 3. 30 잉여금 처분 일 >

(차) 잉여금 1,000,000 (대) 적립금 1,000,0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잉여금처분계산서			
2x17년 1월 1일부터 2x17년 12월 31일까지		2x18년 1월 1일부터 2x18년 12월 31일까지	
XX재단	처분예정일 2x19년 3월 25일	처분확정일 2x19년 3월 30일	(단위: 원)
과목	당기	전기	
미처분잉여금			
전기이월미처분잉여금			
당기운영이익			
임의적립금 등 이입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잉여금처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1,000,000		
차기이월미처분잉여금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2018년 신고조정		차) 잉여금 1,000,000 대) 준비금 1,000,000 법인세 조정 손금산입 1,000,000 유보
2019년 계좌이체	차) 현금 1,000,000 대) 준비금 1,000,000	차) 준비금 1,000,000 대) 현금 1,000,000
2019년 공익부문 사업비 집행	차) 사업비 700,000 준비금 700,000 대) 현금 700,000 잉여금 700,000	법인세 조정 미사용분 익금산입 유보 처리함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익사업]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000	대) 예금	3,000,000
이익잉여금	1,500,000		
기본재산	500,000		

[비수익사업]

차) 예금	3,000,000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000
		잉여금	1,500,000
		출자금	500,0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익금산입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부 폐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산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잔액)
- 미사용분 환입시 이자상당액 가산: 가산세가 아님
 - ✓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1일 22/100,000으로 계산
 - ✓ 가산세가 아니며,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서상에 기재하며 법인세로 납부
 - ✓ 지방세 추가납부: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지방세를 추가납부

계정명	당기합계	당기공익목적	당기기타사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81,212,333	(181,212,33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181,212,333)		(181,212,333)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181,212,333	181,212,333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당기순이익 중 이자부분은 100%, 국가대표수익은 100%, 나머지 기타소득금액은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계산 적립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 고유목적에 사용해야함.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을 추가납부함

년도	당기순이익	법인세비용	고유목적사업전입액	고유목적사업환입액	익금산입	손금산입	상태
2024	115,749,578						작성중
소득금액	결손금	이자수입	기타소득금액	손금산입률	특례기부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15,749,578		974,381	114,775,197	50%		58,361,380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세				증빙	
No.	년도	손금산입액	직전고유사용액	당기고유지출액	고유목적환입액	5년내분	5년경과분	설명
1	2024	58,361,380				58,361,380		
2	2023	109,058,000		109,058,0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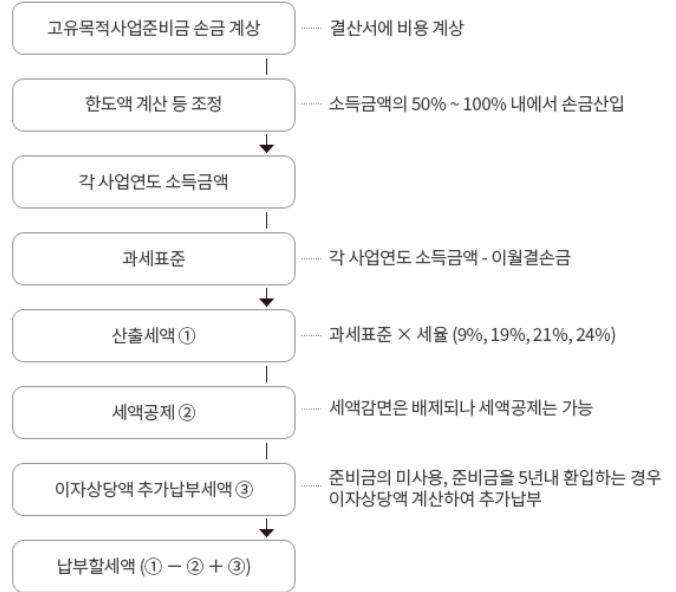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지출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고유목적사업이란?

·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에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565)

-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연구비·장학금 등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단순히 고유목적사업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나,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법인 등은 일반 비영리법인과 달리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입한 경우에도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576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계산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갑)] (개정 2024. 3. 22.)

사 업 연 도	2022. 1.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	법 인 명	(재) A정학재단
	~ 2022. 12. 31.		사업자등록번호	123-82-12345

1. 손금산입액 조정

① 소득금액	②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③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④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①+②+③)	⑤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액	⑥-1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공제 대상액 (=④)	⑥-2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100,000,000	-	100,000,000	100,000,000		
⑦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⑧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 및 제121조의25에 따른 금액	⑨ 수익사업 소득금액 [④-⑤-(⑥-1)-⑦-⑧]	⑩ 손금산입액	⑪ 손금산입한도액 (⑤+⑥+⑩×⑫) 또는 [⑤+⑥-(⑥-2)]	⑫ 손금부인액 [(②-⑩)×0]	
		0	50(80,100) 100	100,000,000	0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

⑬ 사업연도	⑭ 손금산입액	⑮ 직전 사업연도 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⑯ 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⑰ 익금산입액	⑱ 잔 액 (⑮-⑯-⑰)	
					⑲ 5년 이내분	⑳ 5년 경과분
2021	50,000,000	30,000,000	20,000,000	0	0	0
(당 기)	100,000,000	0	70,000,000	0	30,000,000	0
계	150,000,000	30,000,000	90,000,000	0	30,000,000	0

3. 공제대상 이월결손금 명세서

⑳ 사업연도	㉑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	㉒ 공제한도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누적분)	㉓ 공제대상 이월결손금 (㉑-㉒)	㉔ 기타 수익사업 소득금액 [④-⑤-⑦-⑧]	㉕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제 받는 이월결손금	㉖ 공제한도 적용으로 공제 받지 못한 이월결손금 (당기발생분) [Min(㉓, ㉔)-㉕]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을)] (개정 2021. 3. 16.)

(앞 쪽)

사 업 연 도	2022. 1.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을)	법 인 명	(재) A정학재단
	~ 2022. 12. 31.		사업자등록번호	123-82-12345

①구분	②적요	③지출처		④금액	⑤비고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I.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II. 고유목적 사업비	지점 내부수리비	○○공사	104-02-xxxxxx	20,000,000	
	장학금 지급	김우등	820101-xxxxxx	10,000,000	
	장학금 지급	박철실	830301-xxxxxx	10,000,000	
	장학금 지급	최고수	830701-xxxxxx	10,000,000	
III. 고유목적 사업관련 운영경비	직원 급여	홍길순	700101-xxxxxx	23,000,000	
	사무실 월세	○○빌딩	106-03-xxxxxx	12,000,000	
	전화요금	○○통신	106-85-xxxxxx	2,000,000	
	전기요금등	○○전력	112-85-xxxxxx	3,000,000	
IV. 기 타					
⑥계				90,000,000	

작성방법

- 「법인세법」 제2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및 제121조의23제6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작성합니다.
- ② 적요란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상세 항목을 적습니다.
예) 장학금 지급, 부동산(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기재) 취득, 의료기기 취득, 인건비(임원과 직원의 급여)를 구분하여 기재, 임차료, 전기료, 전화료 등
- 비영리법인인 장학재단의 경우에는 ③지출처란에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④ 금액란은 현금의 경우에는 현금지출액을, 현금 외의 기타의 경우에는 시가를 적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 ⑥ 계란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의 ⑩란의 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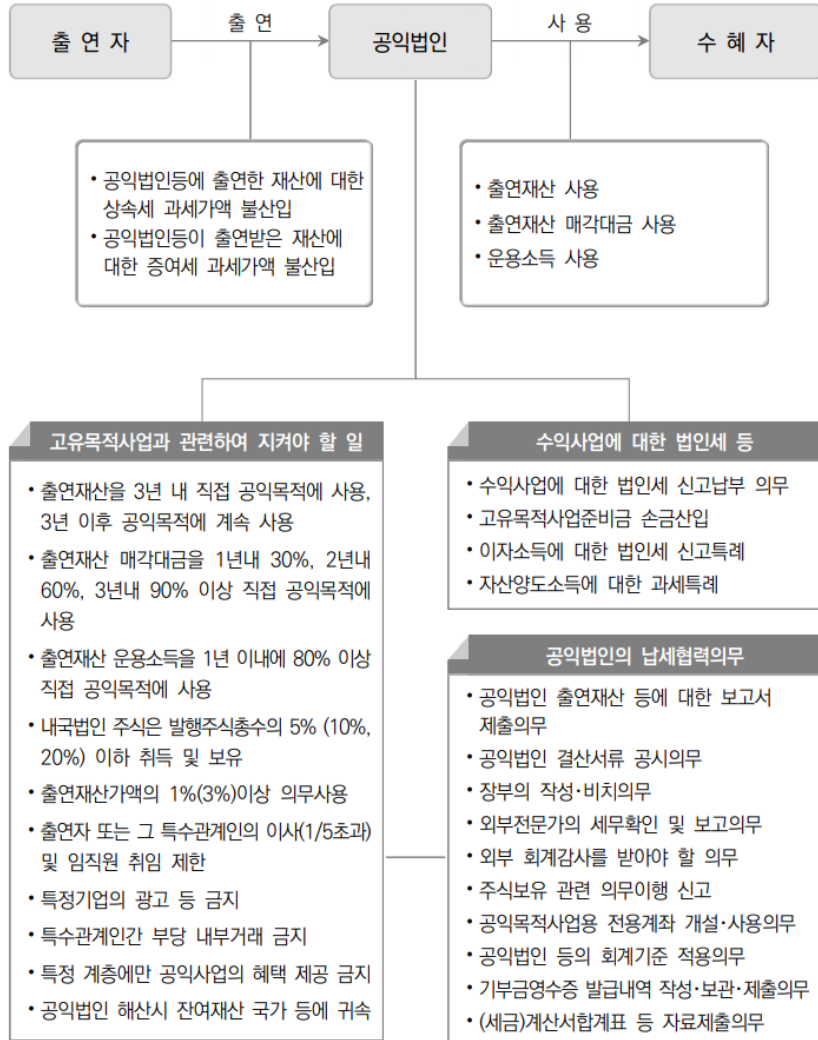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II. 공익법인 세무안내



1. 공익법인 납세의무 개요 및 세무일정

(예시:12월말 법인)



※ 고유목적사업 :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적 직접 수행하는 사업

월	의무 사항과 기한	의무이행 대상
1월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2월	• 계산서합계표 제출(매년 2/10)	계산서를 수취 또는 교부한 경우
3월	•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3/31) (사업연도 종료일부 3개월 이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월	•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4/30) (사업연도 종료일부 4개월 이내)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 결산서류 등 공시(4/30) (사업연도 종료일부 4개월 이내)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다만,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이면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식 5% 초과하여 출연·취득한 경우 등이 아닌 경우 간편 서식 공시 가능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4/30) (사업연도 종료일부 4개월 이내)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4/30) (사업연도 종료일부 4개월 이내)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주식 5% 초과하여 출연·취득한 경우 등
	•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4/30) (사업연도 종료일부 4개월 이내)	동일기업주식 5% 초과하여 출연·취득 또는 계열기업주식을 총자산가액의 30%(50%) 초과 보유한 경우 등
6월	• 기부금영수증발급합계표 제출 (사업연도 종료일부 6개월 이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는 제출 제외)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교부한 경우
	• 정기적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9/14)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 1,000억원 이상 * 지정회계감사대상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1개월 15일이 되는 날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1월과 7월에 확정신고,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공익법인 의무사항

의무사항	관련법령	내 용	의무위반시 가산세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 ☞ p.91	상증법 §48⑤, §78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 (제출) 결산에 관한 서류,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보고서 •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무 업무 가이드 맵(Map) > 공익법인 종합안내 신고/보고 >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미제출·불분명금액 관련 증여세액 x 1% (1억원 한도)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 p.94	상증법 §50의3, §78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 다만,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취득한 공익법인 등이 아닌 경우 간편서식 가능(종교단체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 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결산서류 등 표준공시의무 대상) •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개설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무 업무 가이드 맵(Map) > 공익법인 종합안내 > 공시/공개등록 > 결산서류 등 공시등록 	시정 요구(1개월 이내 공시, 오류 시정)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자산총액 x 0.5%
장부의 작성· 비치 의무 ☞ p.99	상증법 §51, §78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 작성하고 관계 증명서류와 함께 10년간 보존 	(수입금액+출연재산) x 0.07%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보고 ☞ p.101	상증법 §50, §78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제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제출 •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MAX (①,②) ① (수입금액+출연재산) x 0.07% ② 100만원 (1억원 한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 p.107	상증법 §50③, §78⑤ 상증령 §43③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법인(종교·학교법인 제외),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취득한 공익법인 등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함 • (제출) 감사보고서 •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수입금액+출연재산) x 0.07%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 p.110	상증법 §50④, §78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 1천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 지정회계감사대상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1개월 15일이 되는 날 • (기한) 지정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 계약 체결 	(수입금액+출연재산) x 0.07%

의무사항	관련 법령	내 용	의무 위반시 가산세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¹⁾ 신고 ☞ p.111	상증법 §48⑬, §78⑭ 국기법 §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동일기업주식 5% 초과하여 출연·취득 또는 계열기업주식을 총재산 가액의 30%(50%) 초과 보유한 경우 • (제출) 의무이행신고서 등 •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시 자산총액의 0.5% (1억원* 한도) • 중소기업인 경우 5천만원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 p.118	상증법 §50의2, §78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취득한 공익법인 등 포함) • (기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개설신고, 변경·추가시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고시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사용금액의 0.5% • 미신고시 MAX(①,②) ① 공익수입금액(A) x $\frac{B}{C} \times 0.5\%$ B : 전용계좌 개설· 신고 안한 기간 C : 해당 사업연도 일수 ② 대상거래금액 x 0.5%
공익법인 등의 회계기준 적용의무 ☞ p.122	상증법 §50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외부 회계감사의무, 결산서류 공시 의무 이행시 재정경제부 「공익법인 회계기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회계기준 적용 (의료법인, 학교법인 제외)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 보관·제출 의무 ☞ p.123	법법 §112의2, §75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 (제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 5년간 보관 • 미작성·미보관시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국기법 §85의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x 5% • 명세서 미작성 금액 x 0.2%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 p.125	법법 §120의3 §121, §75의8 부법 §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교부한 경우 • (제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 (기한)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 • 국가·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수익사업 부분 제외)은 가산세 적용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제출한 공급가액 x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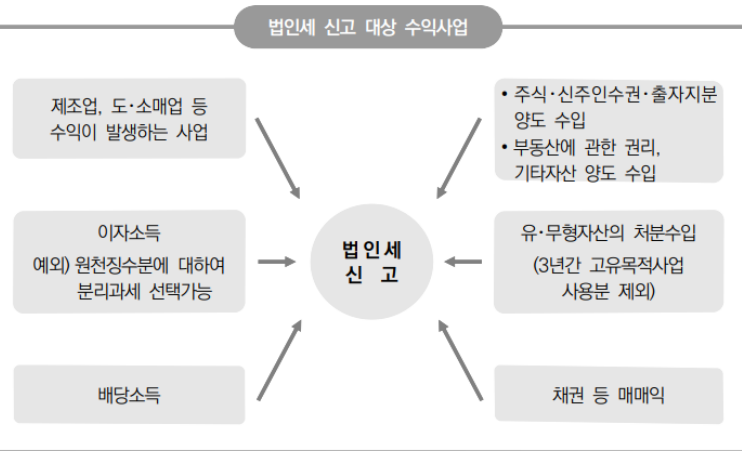
1) '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성실공익법인 확인제'가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제'로 전환

3. 법인세-수익사업

2 수익사업이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인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①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더불어 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청산소득과 미환류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유형



가.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합니다(법법 §4③).

- ①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함 (법인령 §3①)

- ②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 ③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 ④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 ⑤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 수익사업에 속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자산 처분일 현재,
 - (i)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처분한 경우 : 전입 이후 발생한 처분수입* 과세 제외
 - * 비과세 처분수입 = 양도가액 - 고유목적사업 최초 전입시 시가
 - ☞ '18. 2. 13. 이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 (ii) 10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 자산의 보유기간 대비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처분수입 과세 제외

$$\text{비과세 처분수입 (양도가액 - 고유목적사업 최초 전입시 시가)} \times \frac{\text{해당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일수}}{\text{해당 자산을 보유한 일수}}$$

- ☞ 개정 법인령 시행 이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으로 임대사업을 하여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경우 해당 부동산 자체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됨(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특례 적용가능)
 - ☞ 상증법상으로는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님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으로 운용시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봄)
- 당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 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봄
- ⑥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 ⑦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 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 제외)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

4.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경리

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경리(법법 §113, 법인칙 §75·§76)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 기록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산과 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합니다.

1) 자산·부채의 구분경리

자산 및 부채는 구분경리의 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며, 수익사업의 자산 및 부채라 함은 수익사업의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산과 수익을 발생시키는 원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채를 말합니다.

그러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손익의 구분경리

① 개별손익금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별로 그 발생원천이 분명한 개별손익금은 그 원천별로 귀속시켜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 기장합니다.

② 공통손익금(법인칙 §76⑥)

수익 또는 비용을 구분 경리함에 있어 그 구분이 불분명한 공통손익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구분 계산합니다.

□ 공통익금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

□ 공통손금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으로 안분계산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 :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의 자본금(법인칙 §76②)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별도로 있지는 않지만, 세무조정 등에 필요하므로 다음 산식에 따라 자본금을 산정합니다.

수익사업의 자본금 = 수익사업 자산합계액 - 수익사업 부채(충당금 포함)합계액

4)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간의 자본원입(법인칙 §76③④)

①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시가)은 자본의 원입으로 하고,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합니다(법통칙 113-156...2).

② 수익사업용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합니다.

□ 비영리법인의 잉여금의 범위(법통칙 113-156...3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때에는 당해 자산가액을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과 순차적으로 상계처리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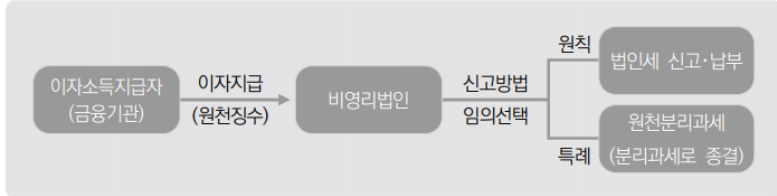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법법 §29에 따라 손금산입된 금액(법법 §29③ 후단의 금액을 포함한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3. 법인세 과세 후의 수익사업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
4. 자본의 원입액

🔍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 수익사업용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하는 경우 자산 가액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금전 외의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 그 자산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자산의 평가이익(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은 전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익금에 해당함(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4, '12.5.16.)
-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의 급여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는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임(법인-553, '09.5.12.)
-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함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3조에 의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법인-526, '09.5.4.)
-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전출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전출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3 제2항에 따라 상계처리하는 것임 (서면2팀-1376, '06.7.20.)

5.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

라.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1)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 특례

비영리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법령 §62①, 법인령 §99①).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납부와 원천징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법인령 §99②).

2)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 특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간이신고서식(별지 제56호 서식 등)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기납부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류(법인칙 §82②)

- ①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칙 별지 제56호 서식)
-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법인칙 별지 제27호 서식)(갑)(을)
- ③ 원천납부세액명세서(법인칙 별지 제10호 서식)(갑)(을) 내지 농어촌특별세과세 대상감면 세액 합계표(법인칙 별지 제13호 서식)

-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후 누락된 타소득 무신고가산세 여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이자소득만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고 과세표준 신고기간이 경과된 후에 누락된 수익사업 부분의 과세표준을 추가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법령해석과-3544, '15.12.29.)
-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기한후 신고 가능 여부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 이자소득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과세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과세절차가 종결된 것이므로, 기한후 신고로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여 원천납부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음 (조심2011부88, '11.4.11.)
-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분리과세 선택방법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을 매사업연도마다 선택적용 가능하며,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시46012-10574, '02.3.21.)

법인세 신고

세금신고	신고내역 조회 (접수종·납부서)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식제내역 조회
매뉴얼보기	매뉴얼보기		미리보기
01.기본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02.법인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input type="radio"/> 사업자 세로작성하기 신고서 불러오기		
03.원천납부세액 명세서(갑)	*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text" value="314"/> - <input type="text" value="82"/> - <input type="text" value="15000"/>		
04.원천납부세액 명세서(을)	*사업연도 <input type="text" value="2024-01-01"/> - <input type="text" value="2024-12-31"/> <input type="button" value="확인"/> *확인,클릭 후 세부사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05.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	<input type="radio"/> 사업자 세부사항		
06.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을)	*상호(법인명) <input type="text"/> *성명(대표자) <input type="text"/>		
07.가산세액계산서	*전화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전자우편주소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선택-		
08.신고서제출	사업장주소 주소검색 <input type="text"/> 도로명주소 <input type="text"/>		
	지번주소 <input type="text"/>		

6. 장부의 작성

3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상증법 §51)

공익법인등은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 및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가. 장부의 작성방법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 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이어야 하며, 증빙서류에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중으로 대차 평균하게 기록된 전표와 증빙서류 또는 계산서(세금계산서 포함)와 영수증에 의하여 재산의 보유, 운용상태와 수입·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160조 및 법인세법 제112조 단서에 따라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하여 작성·비치된 장부와 증빙서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작성·비치된 것으로 보며, 장부와 증빙서류에는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 보존장치에 저장된 것을 포함합니다.

나.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가산세(상증법 §78⑤)

장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할 공익법인등이 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불이행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text{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1 + \text{출연재산가액}^2) \times 0.07\%$$

- 1)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합계(상증령 §80②(3))
- 2)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가액과 회계감사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함(상증령 §80⑥)

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상증법 §78⑤, 상증령 §80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상증령 §43②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 (p.109 '신고대상')인 경우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가산세 대상입니다. (상증령 제31446호 부칙 §11)

- 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상증령 §43②(1))

*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되는 수입금액

※ '13. 12. 3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은 총자산가액 10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에서 그 적용대상이 확대됨

- ②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출연자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함)(상증령 §43②(2))
-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함)(상증령 §43②(3))

(비고)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가 있습니다(법법 §112 단서).

• 법법 §112【장부의 비치·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

• 법법 §75의3【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내국법인이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단, 비영리내국법인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은 제외)

7.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4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상증법 §50)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가.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 등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 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외부회계검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세무확인대상에서 제외였으나, '17.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세무확인대상에 포함됨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확대(상증령 §43 ②, '10년 이후 개정 분)

-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이 5억원 이상
* '11. 7. 25. 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이 3억원 이상으로 대상 확대
* '14. 1. 1. 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나.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상증령 §43②)

자산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증법§50②)

- ①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

- ②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출연자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함)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감사원의 회계 검사를 받는 공익법인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함)

다. 세무확인 실시·보고 기한(상증령 §43⑥, 상증규칙 §14③)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상증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보고 미이행 가산세(상증법 §78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등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text{MAX}\{(\text{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1) + \text{출연재산가액}^2\} \times 0.07\%, 100\text{만원}^3\}$$

마. 외부전문가(2명 이상)

외부전문가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므로 외부전문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할 수 없습니다.

8. 전용계좌 개설, 사용의무

7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상증법 §50의2, 상증령 §43의4)

가. 개요

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증령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종교법인)은 제외*합니다(상증령 §43의4①).

* 종교법인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p.109 '신고대상')인 경우 20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년부터 전용계좌 사용 대상임

여기서 전용계좌란 ①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으로서 ②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하며(상증령 §43의4②), 공익법인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습니다(상증령 §43의4③).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은행, 증권사 등)

또한 공익법인등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별로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수입과 지출,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상증령 §43의4⑨).

나. 전용계좌 사용의무 거래(상증법 §50의2①)

- ①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상증령 §43의4④).
 - 송금 및 계좌 간 자금이체
 - 수표·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②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 다만, 현금으로 직접 받은 경우로서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날로부터 5일까지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는 제외함. 이 경우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의 현금수입 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상증령 §43의4⑤)
- ③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 ④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기부금·장학금·연구비·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상증령 §43의4⑥)
- 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 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다. 전용계좌 외 거래명세서 작성 보관

전용계좌 사용대상거래가 아닌 경우 그 거래일자, 거래상대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전용계좌 외 거래명세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에 수록·보관하여 즉시 출력할 수 있는 상태에 둔 때에는 전용계좌외 거래 명세서(상증규칙 별지 제29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관한 것으로 봅니다(상증법 §50의2②, 상증령 §43의4⑦).

□ 전용계좌 외 거래명세서 작성·보관 제외대상(상증령 §43의4⑧)

- ① 소득세법 §160의2②(3)(4)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갖춘 경우
- ② 거래건당 금액(VAT 포함)이 1만원('08. 12. 31.까지는 3만원) 이하인 수입과 지출 등
- ③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거래 등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208의2①(2)(8), 소득세법 시행규칙 §95의3(2)(4), (7), (8)의3(8)의6의 수입과 지출(상증규칙 §14의4)

라. 전용계좌 개설, 변경 및 추가(상증법 §50의2③)

공익법인은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 개설(변경·추가) 신고서를 납세지(본점이나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익법인등으로 고시하여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으로 보는 경우(법인령§39①(1)바목)에는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16. 1. 1., '17. 1. 1. 또는 '18. 1. 1.이 속하는 과세기간(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으로서 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 6. 30.까지 개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용계좌를 변경·추가하는 때에는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상증법 §50의2④, 상증령 §43의4⑩).

* (주의) 지점법인에서 지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음

9.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

9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제출 의무(법법 §112의 2)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제출의무(법법 §112의2①②)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부금액 등이 포함된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법인칙 제75의2 서식)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08. 12. 31. 까지 :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09. 1. 1. ~ '09. 12. 31. :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10. 1. 1. 부터 :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자

** '21. 7. 1.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의무(법법 §112의2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법인칙 제75호의3 서식)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21. 7. 1.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 과세자료 제출 > 소득·법인세 관련 자료제출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내역 조회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의무 위반시 가산세(법법 §75의4)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신청한 해당 금액으로 함)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 외의 경우 :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20. 1. 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2%에서 5%로 가산세를 개정

②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경우 :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제출하는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2 서식)의 경우 연간 출연(기부)금액 50만원 이상분은 출연자별 출연명세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10. 전자기부금영수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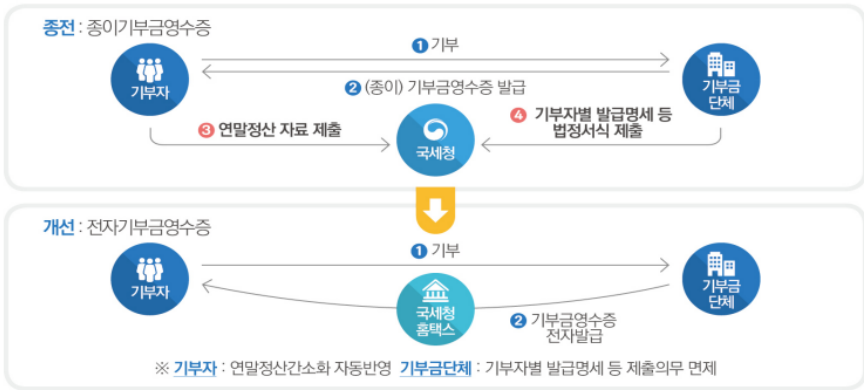
1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2021년 도입·시행)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체가 '21.1.1. 이후 기부를 받는 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기부자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기부금단체에 연락하거나 기부금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우편 또는 이메일로 기부자에게 발송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21년부터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시행으로, 기부금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하여 기부금영수증 발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부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므로, 기부금단체·기부자 모두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관리과정 변화



특히, '25년부터는 직전 사업연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총합계액이 연간 3억원 이상인 기부금단체는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기부금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작성·보관·제출 및 기부금영수증발급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법법§112의2).

개별발급 ▶ 기부 건별로 기부자, 기부일자 등 기부 내역을 직접 입력하여 발급하는 방법이며, 기부자가 동의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기부자가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개별발급 화면

전자기부금영수증 개별발급

기부자 단체

단체명: 다림완선국어용영신우합동 | 사업자등록번호(과무번호): 101-82-42933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9-9, A동 67층 1208호 위례향나는 나문침타 9-9-3(내수동, 아이주보문대)

기부금영수증상 기부금단체 근거명령 선택

기부자

*기부자구분: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익명

*신청구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란] | 성명(법인명): [입력란] | 확인

주소: [입력란]

기부정보입력

*유형: 유형선택 | *기부일자: yyyy-mm-dd

*구분: 금전 현물 | *관리번호: 관리번호(월)를 입력하세요

*금액: 금액(월)을 입력하세요 원

초기화 | 추가하기

10. 기부금영수증 (코드 4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 <개정 2026. 1. 2.>

일련번호

기부금 영수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2 기부금 단체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지점명)	(지점 사업자등록번호 등)
소재지	기부금공제대상 공익법인등 근거법령
(지점소재지)	

* 기부금 단체의 지점(분사무소)이 기부받은 경우, 지점명 등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4 기부내용

코드	구분 (금전 또는 현물)	연월일	내용			금액
			품명	수량	단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_____ 년 월 일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_____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 방법

1. ①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등은 해당 단체를 기부금 공제대상 공익법인등, 공익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코드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가목(국가·지방자치단체), 나목(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10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다목(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102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같은 목에 열거된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신학협력단 등의 기관(법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3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마목(같은 목에 열거된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4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등의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실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단)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105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나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 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	116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포함)	20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0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0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03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404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에 따른 비영리법인	405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406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가목(「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등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40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나목(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408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40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4호(같은 호 각 목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4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6호(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	41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노동조합 등의 회비)	42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공익단체)	42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	46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고향사랑기부금)	462

2. ①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등에게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① 기부내용란의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기부금 또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기부금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4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42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제외)	43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44
필요경비(손금) 및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	50

4. ① 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는만 적습니다. 「현물기부」시 「단가란은 아래 표와 같이 기부자, 특수관계어부 등에 따라 장부가액 또는 시가를 적습니다.

구분	기부자	
	법인	개인
특례기부금	장부가액	개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	장부가액	Max(장부가액, 시가)
그 밖의 기부금	Max(장부가액, 시가)	

5. (유의사항)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 및 제112조의2에 따른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말함)을 발급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중복발행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공익법인 개요

☑ 공익법인이란

- 종교, 교육, 사회복지, 의료, 문화 등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을 말함(상증법§16①, 상증령§12)

- 1 종교단체
- 2 학교·유치원
- 3 사회복지법인
- 4 의료법인
- 5 특례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6 일반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
- 7 재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세제혜택

- **(상속세 및 증여세)** 공익법인에게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음(상증법§16①, 상증법§48①)
- **(소득세)** 공익법인에게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기부금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소법§59의4①)
- **(부가가치세)** 종교·자선·학술·구조 그 밖의 공익목적으로 공익법인이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해 면세(부법§26①(18), 부령§45)
- **(법인세)**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가능(법법§29①)

주요 연간일정

공익법인 주요 업무일정(12월말 결산법인 기준)

일정	납세협력 의무	주요내용
4.30.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자산·수입금액 현황, 출연재산·매각대금·운용소득 사용계획 및 잔액 등 제출
	결산서류 등 공시 -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자산부채 등 재무상태, 사업수익(기부금 등)·비용 등 운영성과 공시
	연간 기부금모금액과 활용실적 공개	기부금 수입·지출내역 등 공개
6.30.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전용계좌 사용, 80% 이상 고유목적사업 지출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
	기부금영수증발급합계표 제출	기부금영수증 발급건수·금액 합계 제출(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 제외)

국세청 주요 업무일정

일정	추진업무
3월	•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 리플릿 작성·배포 • ①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②결산서류 공시, ③의무이행 여부 보고 안내
4월	• 공익법인 회계실무자 세법교실 운영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taxstudy.nts.go.kr) → 납세자 세법교실 → 참가신청 
5월	• ①출연재산 보고, ②결산서류 공시, ③의무이행보고 기한후신고 안내 • 기부금영수증발급합계표 제출 안내
5~11월	• 대규모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목적사용 여부 등 개별검증(지방청)
7~9월	•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점검
8~11월	• 중소규모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목적사용 여부 등 전산사후관리(세무서)
9~11월	•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요류 점검
12월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1 줄임말 설명 : 상증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법법 → 법인세법, 부법 → 부가가치세법, §00 → 제00조, ① → 제1항
2 관련 법령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axlaw.nts.go.kr/index.do>)에서 확인 가능 : 포털사이트에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으로 검색

공익법인 주요업무

대상법인	주요 신고·제출 의무(12월말 결산 법인 기준)	위반 시 가산세
소규모 공익법인 (자산 5억 미만 & 수입금액+출연재산 3억 미만) ① - ③번	1 출연재산보고서 등 제출의무(상증법§48③, §78②) • 기부금 등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매각대금·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함(다음연도 4월까지)	미제출·불분명 등 금액 관련 상속(증여)세액 × 1%
	2 결산서류 등 공시업무(상증법 §50의3, §78①) •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기부금공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결산서류 등을 공시해야 함(다음연도 4월까지) ☞ 소규모 공익법인은 첨부서류 없이 간편하게 공시 가능	자산총액 × 0.5% (시정요구 미이행시)
	3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법령 §38②③, §39⑤⑥) •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전용계좌 개설·사용, 홈페이지 개설, 80% 이상 고유목적사업 지출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다음연도 4월까지)	• 재정부 지정법인 : 지정주소 • 그 외 법인 : 명단공개
	4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상증법 §50의2, §78②) •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공익목적사업 용도로만 사용하는 금융계좌(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기한 내 전용계좌를 신고해야 함 ☞ 개설신고 기한 :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변경 추가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부 1개월 이내)	• 미사용금액 × 0.5% • 미신고시 max(1, 2) B 1 공익수입금액(A) × C × 0.5% B : 전용계좌 개설·신고 안한 기간 C : 해당 사업연도 일수 2 대상거래금액 × 0.5%
	5 기부금영수증발급합계표 제출, 기부자별 발급명세 작성 등 의무(법법§112의2) •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기부금영수증발급합계표 제출 등의 의무가 있음(다음연도 6월까지) ☞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의무 면제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 5% • 명세서 미작성 금액 × 0.2%
중규모 공익법인 (자산 5~100억 or 수입금액+출연재산 3~50억) ① - ③번	6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의무(상증법§50②, §78②) •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부터 출연재산 공익목적 사용, 출연재산 보고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다음연도 4월까지) *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 또는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상	max(1, 2) 1 (수입금액 + 출연재산) × 0.07% 2 100만원
대규모 공익법인 (자산 100억 이상 or 수입금액+출연재산 50억 이상 or 출연재산 20억 이상) ① - ③번	7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제출의무(상증법§50③, §78③) • 직전연도 1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2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3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학교법인 제외)은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다음연도 4월까지)	(수입금액 + 출연재산) × 0.07%
	8 주기적 감사인 지정 의무(상증법§50④) • 총자산가액 1천억 이상인 공익법인은 4개 연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연속하는 2개 연도는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감사법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수입금액 + 출연재산) × 0.07%

* 주식소과보유 공익법인은 매년 의무이행 여부를 신고해야 함(상증법§48③, §78②)

도움정보 안내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 도움자료 제공 현황

-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 코너에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 등 공익법인 업무전반 도움자료 제공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공익법인

☑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신청

- 홈택스 → 세무 업무 가이드 맵(Map) → 공익법인종합안내 → 공익법인 사전상담 신청

공익법인안내 포털

- 공익법인이 이행해야 할 협력의무를 한눈에 확인하고, 각종 신청·발급을 편리하게 이용 가능
- 홈택스 → 세무 업무 가이드 맵(Map) → 공익법인종합안내

신고·등록·공개·열람 메뉴

- 통합신고(결산서류+출연재산보고서 제출)
- 결산서류 공시·열람
- 전용계좌 개설신고
- 기부금단체 조회
-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 의무이행 보고
-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움정보안내

- 뉴스레터
- 신고동영상
- 세무안내 책자
- 리플릿

지켜야 할 사항



	세법상 의무사항	위반 시 제재사항
출연재산 연간매출액 50%	<p>출연재산 등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p> <p>☑ 출연재산(기부금, 부동산, 주식 등): 상증법 §48②(1), 상증령 §3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고, 3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여세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내 미사용금액 - 3년 이후 사용중단금액 - 공익목적 외 사용금액
	<p>☑ 출연재산(부동산, 주식 등) 매각대금: 상증법 §48②(4)(5), 상증령 §38④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연재산을 매각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 이상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 예) (23.9월) 부동산 100억 매각 → (24년) 30억 (25년) 60억 (26년) 90억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여세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목적 외 사용금액 - 90% 미달 사용금액 가산세 10% 부과 (1~2년 기준미달 사용금액)
	<p>☑ 출연재산 운용소득(이자, 임대료, 배당금 등): 상증법 §48②(3)(5), 상증령 §38⑥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 예) (24년) 이자 100만원 → (25.1~12월) 80만원 이상 공익목적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여세 부과 (공익목적 외 사용금액) 가산세 10% 부과 (기준미달 사용금액)
	<p>☑ 수익용 출연재산 의무사용: 상증법 §48②(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출연재산 합계액 3억원 이상, ②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 등 초과보유하는 경우 <p>⇒ 매년 수익(사업)용 재산의 1% * 상당액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 * 발행주식총수의 10% 초과 보유시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산세 10% 부과 (기준미달 사용금액) 가산세 200% * 부과 * 주식 5% 등 초과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연간매출액 50%	<p>☑ 이사·임직원 취임 제한(상증법 §48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 이사 수의 1/5를 초과하거나 임직원으로 취임 제한 * 공익법인 등(의료법인 제외)의 범위: 상증령 §38② 예) 공익법인이 자녀 등 친인척, 계열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 등을 이사·임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 등 지급시 가산세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산세 부과 (관련 경비 전액)
	<p>☑ 자기내부거래 금지(상증법 §48②, 상증령 §3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수익 금지 예)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 법인에게 상가를 출연받고, 해당 법인에게 정상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계약 체결시 증여세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여세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사용: 해당 출연재산가액 - 정상대가 보다 낮은 가액 사용: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
	<p>☑ 주식의 출연·취득·보유 제한 등(상증법 §16②, §48①②(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동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10%, 20%)*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거나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경우 * 상증법 §48② 요건 충족시 10%, 의결권 미행사정관에 규정한 자선장학사회복지법인 20% ② 특수관계인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공익법인의 총자산가액의 30%(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를 이행하는 경우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증여세 부과 (초과 보유분) 2 가산세 5% 부과 (초과 보유분)
	<p>☑ 기타 의무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상증법 §48②) ②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 혜택제공 금지(상증법 §48②(8)) ③ 공익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국가 등 귀속(상증법 §48②(8))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산세 부과(비용전액) 2 증여세 부과(제공가액) 3 증여세 부과(잔여재산)

체크리스트



구분	체크사항	적정 여부	
법인·연간매출액 50%	<p>☑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 1월·4월·7월·10월의 10일까지 신청 → 매분기말 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단·재단법인 등이 10월 10일까지 지정추천을 신청하면 신청연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공익법인으로 인정됨(7기한내 미신청한 경우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증여세 과세) * (신청대상)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학술, 문화, 예술, 장학단체) 	Y <input type="checkbox"/>	N <input type="checkbox"/>
	<p>☑ 공익법인 전용계좌(공익목적사업 수입·지출 등 관련 모든허좌) 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개설) 공익법인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추가개설) 추가개설할 때마다 1개월 이내 모든 전용계좌 신고 ☑ 홈택스에서 전용계좌 신고시 「공익법인 계좌」 버튼을 선택(사업용계좌 아님) 	Y <input type="checkbox"/>	N <input type="checkbox"/>
	<p>☑ 특수관계인 이사·임직원 채용 제한 준수 여부 ☑ 특수관계인 사전선정제 활용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법인 출연자의 자녀 등 친척, 계열사 퇴직임원 등 채용 제한 ☑ 임직원 중 의사, 교직원, 보육사, 사서, 학예사, 사회복지사, 연구원 등은 채용 가능 	Y <input type="checkbox"/>	N <input type="checkbox"/>
법인·연간매출액 50%	<p>기부금 (현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금을 전용계좌에 입금 여부(현금을 받은 경우 5일까지 전용계좌 입금) 3년 이내 전부 사용 여부(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 취득 포함) 정기예금 이자 등 운용소득이 발생한 다음 사업연도까지 80% 이상 사용 여부 현금을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대여시 정당한 이자율 적용 여부 	Y <input type="checkbox"/>	N <input type="checkbox"/>
	<p>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상가 등을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임대시 정당한 대가 계약 여부 상가 임대소득 등 운용소득이 발생한 다음 사업연도까지 80% 이상 사용 여부 상가 등을 매각시 다음 사업연도에 기준금액 이상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 기준금액: (1년차) 30% (2년차) 60% (3년차) 90% 사용 여부 매각대금으로 정기예금,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상 운용 여부 	Y <input type="checkbox"/>	N <input type="checkbox"/>
	<p>주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가액의 1% 이상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배당소득 등 운용소득이 발생한 다음 사업연도까지 80% 이상 사용 여부 매각한 다음 사업연도에 기준금액 이상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 기준금액: (1년차) 30% (2년차) 60% (3년차) 90% 사용 여부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여부(동일기업 주식 5% 초과보유 등) 	Y <input type="checkbox"/>	N <input type="checkbox"/>
법인·연간매출액 50%	<p>☑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대상인 법인은 세무확인서 첨부 여부 확인 	Y <input type="checkbox"/>	N <input type="checkbox"/>
	<p>☑ 결산서류 공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사업연도 기간동안 수혜받은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수혜자(수혜단체)에 대해 개별 수혜자(수혜단체)별로 기재 여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가액의 1%와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상 출연자에 대해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에 출연자 성명, 출연가액 등 기재 여부 공시요류 등으로 결산서류를 재공시하는 경우, 당초에 제출한 외부회계감사보고서 등 모든 첨부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여부(기한 후 수정 공시한 이력 모두 공개) 지점(예: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시내용에 지점의 결산내역(자산·부채, 수입·비용)을 포함 여부 	Y <input type="checkbox"/>	N <input type="checkbox"/>
	<p>☑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여부(종교법인 제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무사항: 전용계좌 개설·사용, 홈페이지 개설, 80% 이상 고유목적사업 지출 등 	Y <input type="checkbox"/>	N <input type="checkbox"/>
	<p>☑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여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발급내역을 집계하여 작성(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 제외) 	Y <input type="checkbox"/>	N <input type="checkbox"/>

III. 공익법인 결산공시



1. 홈택스 공시

- 02. 재무상태표
- 03. 운영성과표
- 04. 주석서류 제출 및 작성
- 05. 재무현황 및 자산현황
- 06. 수익현황 및 비용현황
- 07.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 08. 공익목적사업 수익, 비용 세부현황
- 09. 기타사업 손익 세부현황
- 10.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 11.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 12.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 13. 사용계회 및 진도내역서
- 14. 주식등의 출현, 취득, 보유 및 처분명세
- 15. 이사 등 선임 및 기준초과 경비명세
- 16.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 17. 특징기업광고 등 명세서
- 18. 감사보고서 첨부 서류
- 19. 세무확인서
- 20.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 22. 작성완료 및 제출
- 23. 종료

새로 작성하기 작성 중인 내용 삭제하기 - 작성내역 불러오기

사업자

* 사업연도(과세기간) 2025 년 01 월 01 일 ~ 2025 년 12 월 31 일

* (2) 사업자등록번호 215-82-02057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자 세부사항

* (1) 공익법인등 명 * 공시구분 정기공시 해산공시

* (3) 대표자 송*** * (4) 설립연월일 1988-09-01

* (5) 소재지(주소) 주소검색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
건물명(아파트,상가) 동 층 호

* (6) 전화번호 02 - 420 - 4266 팩스번호 - -

(7) 홈페이지

* (8) 전자우편주소 sym7247 @ naver.com 직접입력

* (9) 주무관청 문화체육관광부 * (10) 기부금(단체)유형 특례 일반 기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사립학교법 의료법 협동조합기본법
 기타법률 해당없음

* (11) 설립 근거법 민법32조

* (12) 설립유형 재단법인 사단법인 법인으로보는단체 공공기관 기타단체

* (13) 공익사업유형 교육 학술·정학 사회복지 의료 종교 문화 기타

* (14) 설립주체 개인 기업 기업+개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 (15) 이사수 32 명 * (16) 자원봉사자 연인원 수 0 명

* (17) 고용직원수 21 명 * 수익사업운영여부 예 부

작성방법

* 이 서식은 모든 공익법인등(종교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합니다)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이 서식을 작성할 때에는 통합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작성을 위한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1. 기본사항
- 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대하여 공시하는 경우 "해산공시"에, 그 외의 경우 "정기공시"에 √ 표를 합니다.
 나. "⑥주무관청"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 명칭을 적고,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익법인등을 관리, 감독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기관의 명칭을 괄호에 기록합니다.
 (예시)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장학재단인 경우 교육부(교육청),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종교법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 주무관청이 없는 단체의 경우 관할세무서를 주무관청으로 기록합니다.
 다. "⑩기부금 유형"란 해당 공익법인이 사립학교, 국립대학병원 등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또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대상인 경우 "특례기부금"에, 사회복지·문화·교육·종교 등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대상인 경우 "일반기부금"에, 그 밖의 경우 "기타"에 √ 표를 합니다.
 라. "⑪설립근거법"란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법률 등을 선택하여 모두 적습니다.
- 1) 「민법」,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3) 「사회복지사업법」, 4) 「사립학교법」, 5) 「의료법」, 6) 「협동조합 기본법」, 7) 그 밖의 법률, 8) 해당 없음
- 마. "⑫설립유형"란 해당되는 단체유형에 √ 표를 합니다.
 - 「민법」이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란에 √ 표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 표를 합니다.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 표를 합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등은 기타에 √ 표를 합니다.
- 바. "⑬공익사업유형"란 1) 교육, 2) 학술·정학, 3) 사회복지, 4) 의료, 5) 예술·문화, 6) 종교, 7) 그 밖의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사. "⑭설립주체"란 설립주체(기본재산 출연자)에 √ 표를 합니다.
 ※ 설립주체
 - (개인) 개인 또는 가족이 설립한 단체 (기업) 기업이 설립한 단체, (개인·기업) 개인과 기업이 동일한 출연금으로 설립한 단체
 - (국가) 국가(정부) 및 공공기관이 설립한 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단체
 - (기타) 그 밖의 주체가 설립한 단체
 - 개인과 기업이 함께 출연하여 설립한 경우에는 개인출연금이 기업출연금보다 크면 "개인"을, 기업출연금만 개인출연금보다 크면 "기업"을 선택합니다.
- 아. "⑮이사 수"란 사업연도말 현재 이사회 구성원(등기사항증명서상 이사)인 이사 수를 적습니다(법인이 아닌 단체는 정관의 요건을 충족한 이사 수를 적습니다).
 자. "⑯자원봉사자 연인원 수"란 자원봉사자 연인원을 적습니다.
 (예) 1명의 자원봉사자가 365일 봉사활동을 수행했을 경우, 1*365=365명
- 차. "⑰고용직원 수"란 공익법인등의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을 포함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상시 인원을 합하며, 일용직은 제외합니다)를 적습니다.
 ※ 연 평균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상시 고용직원 수 합계 / 사업연도 월수)
2. 재무현황
- "⑱총자산가액-외순자산조정"란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익법인이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 및 부채, 순자산 가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㉔ 공익목적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을 말합니다(예: 문화·예술 전시사업, 연주회 등 공익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임차료 수익 등은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이지만 공익목적사업부문으로 구분합니다).
 ※ "㉕ 기타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 ※ 공익목적사업 부문과 기타사업 부문 구분 시 참고사항

- 정관에 기재된 사업이더라도 공익목적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은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하며, 공익목적활동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이라도 기념품 판매, 카페 운영, 금융소득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자산 투자 등은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합니다.

2. 재무상태표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등록. 수익사업은 기타사업 또는 공익목적사업으로 될 수 있음
 수익사업이 공익목적과 관련되면 공익목적으로 처리함. 기타사업으로 분류되는 수익사업은 임대사업등
 내부거래는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된 경우에만 등록함. 합계금액은 0이 되어야 함

내부거래조정

엑셀 불러오기

엑셀서식 내려받기

전기 기 2024-12-31

당기 기 2025-12-31

당기 전기

(단위:원)

과목코드	과 목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내부거래조정
10000	자산				
11000	1. 유동자산	3,494,696,998	3,494,696,998	0	0
11100	1. 현금및현금성자산	775,987,142	775,987,142	0	0
11200	2. 단기투자자산	2,642,304,856	2,642,304,856	0	0
11300	3. 매출채권	0	0	0	0
11310	(-) 대손충당금	0	0	0	0
11400	4. 선급비용	0	0	0	0
11500	5. 미수수익	61,608,520	61,608,520	0	0
11600	6. 미수금	0	0	0	0
11610	(-) 대손충당금	0	0	0	0
11700	7. 선급금	0	0	0	0
11800	8. 재고자산	0	0	0	0
11900	9. 기타	14,796,480	14,796,480	0	0
11910	가. 선납세금	14,796,480	14,796,480	0	0

계정명	당기합계	당기공익목적	당기기타사업	전기합계	전기공익목적	전기기타사업
10000 유동자산	3,494,696,998	3,479,900,518	14,796,480	3,446,990,358	3,446,990,358	
11000 당좌자산	3,494,696,998	3,479,900,518	14,796,480	3,446,990,358	3,446,990,358	
11120 보통예금	775,987,142	775,987,142		706,282,038	706,282,038	
11310 정기예금	2,642,304,856	2,642,304,856		2,642,304,856	2,642,304,856	
11340 미수수익	61,608,520	61,608,520		81,684,634	81,684,634	
11430 선납세금	14,796,480		14,796,480	16,718,830	16,718,830	
20000 비유동자산	35,746,286	35,746,286		52,514,306	52,514,306	
22000 유형자산	35,746,286	35,746,286		52,514,306	52,514,306	
22600 비품	144,163,900	144,163,900		144,163,900	144,163,900	
22630 비품감가상각누계액	(108,417,614)	(108,417,614)		(91,649,594)	(91,649,594)	
29000 자산	3,530,443,284	3,515,646,804	14,796,480	3,499,504,664	3,499,504,664	
31000 유동부채	189,603,783	174,807,303	14,796,480	345,838,814	345,838,814	
31020 미지급금	59,888,865	59,888,865		327,149,766	327,149,766	
31030 미반납금	65,777	65,777				
31050 미지급비용	111,574,970	111,574,970				
31080 예수금	16,324,171	16,324,171		18,689,048	18,689,048	
31100 부가세예수금	1,750,000		1,750,000			
31140 고유목적회계미지급금		(13,046,480)	13,046,480			
32000 비유동부채	36,800,185	36,800,185		39,766,133	39,766,133	
32020 퇴직급여충당금	301,485,636	301,485,636		278,340,628	278,340,628	
32030 퇴직연금운용자산	(264,685,451)	(264,685,451)		(238,574,495)	(238,574,495)	
39000 부채	226,403,968	211,607,488	14,796,480	385,604,947	385,604,947	
41000 기본순자산	2,642,304,856	2,642,304,856		2,642,304,856	2,642,304,856	
41100 기본순자산	2,642,304,856	2,642,304,856		2,642,304,856	2,642,304,856	
42000 보통순자산	661,734,460	661,734,460		471,594,861	471,594,861	
42100 잉여금	471,594,861	471,594,861		471,594,861	471,594,861	
42110 당기운영이익	190,139,599	190,139,599				
49000 순자산	3,304,039,316	3,304,039,316		3,113,899,717	3,113,899,717	
49990 부채및순자산 총계	3,530,443,284	3,515,646,804	14,796,480	3,499,504,664	3,499,504,664	

11920	나.회계간거래	0	0	13,046,480	13,046,480
21930	다.회계간거래	0	13,046,480	0	13,046,480

2.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기 20××년×월×일 현재						
제×기 20××년×월×일 현재						
공익법인명	(단위 : 원)					
과 목	당 기			전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자 산						
유동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비유동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투자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유형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무형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기타비유동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자 산 총 계	xxx	xxx	xxx	xxx	xxx	xxx
부 채						
유동부채	xxx	xxx	xxx	xxx	xxx	xxx
비유동부채	xxx	xxx	xxx	xxx	xxx	xxx
<u>고유목적사업준비금</u>	xxx	xxx	xxx	xxx	xxx	xxx
부 채 총 계	xxx	xxx	xxx	xxx	xxx	xxx
순자산						
기본순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보통순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순자산조정	xxx	xxx	xxx	xxx	xxx	xxx
순 자 산 총 계	xxx	xxx	xxx	xxx	xxx	xxx
부채 및 순자산 총계	xxx	xxx	xxx	xxx	xxx	xxx

- 유동, 비유동 구분
- 유동성배열법
- 총액인식
- 미결산항목 및 비망계정 표시

재무제표 작성단위

- 공익법인을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통합
-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 (정관기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결산조정시: 부채의 별도항목으로 표시
- 신고조정시: 보통순자산의 준비금으로 표시

순자산(자본)

- 기본순자산: 사용 및 처분의 제한
- 보통순자산: 잉여금과 사용제한 없는 자산
- 순자산조정: 평가금액 조정

공용자산의 표시

- 안분계산(면적, 빈도등)
- 주된 사업부문에 표시

3. 운영성과표

운영성과표에서는 내부거래(공익에서 기타)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수익사업에서 내부거래에 따른 세무상 비용인식이 불가하며, 수익을 인식하는 것 또한 불가함
 기부금수익은 실제기부금내역과 반드시 맞아야함. 차이가 나는부분은 기타. 후원금수익으로 인식

(단위:원)

과목코드	과목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10000	I. 사업수입	5,580,883,271	5,484,670,938	96,212,333
11000	1. 기부금수익	1,129,267,207	1,129,267,207	
12000	2. 보조금수익	4,187,546,082	4,187,546,082	
13000	3. 회비수익			
14000	4. 투자자산수익	164,069,982	67,857,649	96,212,333
14100	가. 이자수익	82,191,796	-14,020,537	96,212,333
14200	나. 배당수익			
14300	다. 기타	81,878,186	81,878,186	
15000	5. 매출액	100,000,000	100,000,000	
16000	6. 기타			
16100	가. 후원금수익			
16200	나. 법인전입금			

20000	II. 사업비용	4,267,784,520	4,267,784,520	
21000	1. 사업수행비용	4,267,784,520	4,267,784,520	
21100	가. 분배비용	1,193,905,741	1,193,905,741	
21200	나. 인력비용	1,539,081,295	1,539,081,295	
21400	라. 기타비용	1,351,143,008	1,351,143,008	
21410	① 여비교통비	523,078,398	523,078,398	
21420	② 소모품비	301,579,391	301,579,391	
21430	③ 지급수수료	366,442,600	366,442,600	

60000	VI.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181,212,333		181,212,333
70000	VII.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181,212,333	181,212,333	0
60000	VI.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181,212,333	181,212,333	
70000	VII.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181,212,333	181,212,333	

계정명	당기합계	당기공익목적	당기기타사업
50000 사업수익	5,580,883,271	5,384,670,938	196,212,333
51200 강습료수익	41,592,000	41,592,000	
51400 투자자산수익	82,191,796	(14,020,537)	96,212,333
51600 수수료수익	140,286,186	40,286,186	100,000,000
52100 국고보조금수익	3,802,888,092	3,802,888,092	
52200 지방보조금수익	358,500,000	358,500,000	
52300 기타보조금수익	26,157,990	26,157,990	
53100 기부금수익	1,129,267,207	1,129,267,207	
60000 사업비용	5,444,922,524	5,429,922,524	15,000,000
61100 급여	427,226,099	427,226,099	
61300 기타직보수	953,000,000	953,000,000	
61400 임용임금	8,887,080	8,887,080	
61500 강사료	439,411,260	439,411,260	
61600 퇴직급여	100,538,003	100,538,003	
61700 복리후생비	136,942,960	136,942,960	
61710 복리후생비-기타	562,200	562,200	
61800 교육훈련비	394,800	394,800	
62100 임차료비용	202,184,976	202,184,976	
62600 감가상각비	16,768,020	16,768,020	
63010 여비교통비	536,544,218	536,544,218	
63011 국내여비	146,805,953	146,805,953	
63012 국외여비	264,884,341	264,884,341	
63020 소모품비	315,019,591	315,019,591	
63030 수수료비용	431,058,100	416,058,100	15,000,000
63050 공공요금	3,483,460	3,483,460	
63060 보험료	7,889,910	7,889,910	
63070 차량유지비	99,978	99,978	
63080 피복비	103,234,990	103,234,990	
63100 중고선전비	13,968,500	13,968,500	
63170 회의비	3,839,440	3,839,440	
63180 업무추진비	43,384,350	43,384,350	
63190 기타운영비	92,194,437	92,194,437	
64200 고유목적사업비용	1,196,599,858	1,196,599,858	

3. 운영성과표

운영성과표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단위: 원)							
공익법인명	과목	당기			전기		
		총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총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사업수익		xxx	xxx	xxx	xxx	xxx	xxx
기부금수익		xxx	xxx	-	xxx	xxx	-
보조금수익		xxx	xxx	-	xxx	xxx	-
회비수익		xxx	xxx	-	xxx	xxx	-
투자자산수익		xxx	xxx	-	xxx	xxx	-
매출액		xxx	xxx	-	xxx	xxx	-
.....		xxx	xxx	-	xxx	xxx	-
사업비용		xxx	xxx	xxx	xxx	xxx	xxx
사업수행비용		xxx	xxx	-	xxx	xxx	-
○○사업수행비용		xxx	xxx	-	xxx	xxx	-
△△사업수행비용		xxx	xxx	-	xxx	xxx	-
.....		xxx	xxx	-	xxx	xxx	-
일반관리비용		xxx	xxx	-	xxx	xxx	-
모금비용		xxx	xxx	-	xxx	xxx	-
.....		xxx	-	xxx	xxx	-	xxx
사업이익(손실)		xxx	xxx	xxx	xxx	xxx	xxx
사업외수익		xxx	xxx	xxx	xxx	xxx	xxx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xxx	xxx	xxx	xxx	xxx	xxx
유형자산처분이익		xxx	xxx	xxx	xxx	xxx	xxx
전기오류수정이익		xxx	xxx	xxx	xxx	xxx	xxx
.....		xxx	xxx	xxx	xxx	xxx	xxx
사업외비용		xxx	xxx	xxx	xxx	xxx	xxx
기타의 대손상각비		xxx	xxx	xxx	xxx	xxx	xxx
유형자산손상차손		xxx	xxx	xxx	xxx	xxx	xxx
유형자산처분손실		xxx	xxx	xxx	xxx	xxx	xxx
유형자산재평가손실		xxx	xxx	xxx	xxx	xxx	xxx
전기오류수정손실		xxx	xxx	xxx	xxx	xxx	xxx
.....		xxx	xxx	xxx	xxx	xxx	xxx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xxx	xxx	xxx	xxx	xxx	xxx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xxx	xxx	xxx	xxx	xxx	xxx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		xxx	xxx	xxx	xxx	xxx	xxx
법인세비용		xxx	xxx	xxx	xxx	xxx	xxx
당기운영이익(손실)		xxx	xxx	xxx	xxx	xxx	xxx

운영성과표	
과목	설명
사업수익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등이 있음
(-) 사업비용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로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등이 있음
= 사업이익(손실)	
(+) 사업외수익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 유형·무형자산처분이익,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이 있음
(-) 사업외비용	사업비용이 아닌 비용 또는 차손으로 유형·무형자산처분손실,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 유형자산재평가손실 등이 있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공익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부문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의미함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에 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되었거나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금액을 의미함
=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	
(-) 법인세비용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법인세비용 또는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따른 법인세비용
= 당기운영이익(손실)	

3. 운영성과표 > 사업비용

사업비용은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를 말하며, 사업비용은 공익목적사업비용과 기타사업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공익목적사업비용은 활동의 성격에 따라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또한,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에 대해서는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한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해야한다.

3. 운영성과표 > 사업관리 (프로젝트)

- 사업은 어떤 목적으로 지출되는지를 구분하기 위함임
- 사업이 많은 경우, 공시목적으로 해당사업을 묶을 필요가 있음. 공시용 사업은 10개이하 적당함
- 일반관리비용과 모금비용은 하나의 사업으로 관리해야 함

사업코드	사업명	사업비용구분	사업비용코드 및 명칭	미사용
12010101	인건비	일반관리비용	60600 일반관리비용	<input type="checkbox"/>
12010102	기관운영비	일반관리비용	60600 일반관리비용	<input type="checkbox"/>
12010103	행정전산비	일반관리비용	60600 일반관리비용	<input type="checkbox"/>
12010104	장애인체육홍보	일반관리비용	60600 일반관리비용	<input type="checkbox"/>
12010201	장애인종합체육시설운영	일반관리비용	60600 일반관리비용	<input type="checkbox"/>
12020101	장애인생활체육활동지원	사업수행비용	60120 장애인생활체육지원	<input type="checkbox"/>
12020103	생활체육지도사관리및교육	사업수행비용	60120 장애인생활체육지원	<input type="checkbox"/>
12020104	장애인시도지부지원	사업수행비용	60190 장애인체육시도지부지원	<input type="checkbox"/>
12020202	장애인가맹단체지원	사업수행비용	60140 장애인체육가맹단체지원	<input type="checkbox"/>
12020204	장애인스포츠경기력향상_2018	사업수행비용	60110 장애인전문체육및국제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020205	장애인동계스포츠육성_2018	사업수행비용	60110 장애인전문체육및국제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020206	장애인스포츠권역보호활동	사업수행비용	60110 장애인전문체육및국제체	<input type="checkbox"/>
12020207	장애인은퇴선수지원	사업수행비용	60110 장애인전문체육및국제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020301	장애인전국체전지원_2018	사업수행비용	60110 장애인전문체육및국제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020302	장애인국내대회지원	사업수행비용	60110 장애인체육대회지원	<input type="checkbox"/>
12020401	장애인실업팀육성_2018	사업수행비용	60110 장애인전문체육및국제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020501	국가대표훈련및국제대회참가지원_2018	사업수행비용	60110 장애인전문체육및국제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020502	장애인국제스포츠교류	사업수행비용	60110 장애인전문체육및국제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020503	장애인체육인식개선프로그램	사업수행비용	60120 장애인생활체육지원	<input type="checkbox"/>
12031501	개인정보보호강화시스템도입	사업수행비용	60150 체육문화예술사업의지원	<input type="checkbox"/>
12031601	2018국제업무전문인력활동지원	사업수행비용	60150 체육문화예술사업의지원	<input type="checkbox"/>

상세
사업비용코드관리

사업비용구분
 - 60100~60500: 사업수행비용, - 60600: 일반관리비용, - 60700: 모금비용

+New

사업비용	사업비용명	
60110	장애인전문체육및국제체육지원	<input type="checkbox"/>
60115	패럴림픽코리아하우스	<input type="checkbox"/>
60120	장애인생활체육지원	<input type="checkbox"/>
60121	기타사업	<input type="checkbox"/>
60130	자체사업	<input type="checkbox"/>
60140	장애인체육가맹단체지원	<input type="checkbox"/>
60150	체육문화예술사업의지원	<input type="checkbox"/>
60160	주최단체지원금	<input type="checkbox"/>
60170	기타보조사업	<input type="checkbox"/>
60180	이천훈련원건립지원	<input type="checkbox"/>
60190	장애인체육시도지부지원	<input type="checkbox"/>
60200	장애인체육법인단체지원	<input type="checkbox"/>
60600	일반관리비용	<input type="checkbox"/>

3. 운영성과표 > 예산과목 계정과목 구분

- 예산과목과 계정과목은 비용(수입)의 성격으로, 예산과목에 대해서 계정과목 매핑이 필요함
- 계정과목 대해서 사업비용의 분류(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분배비용)가 지정되어 있어야함

계정코드	계정과목명	FS구분	TYPE	중분류	관리항목	미사용
62200	전력비	IS	지출	60000	사업비용	<input type="checkbox"/>
62000	사업비용			사업비용명		
62000	시설비용			시설비용		
64200	고유목적사업비용	IS	지출	60000	사업비용	<input type="checkbox"/>
64000	사업비용			사업비용명		
64000	분배비용			분배비용		

사업비용구분	계정코드	계정명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사업수행비용	합계		1,193,905,741	1,539,081,295	183,654,476	1,336,143,008	4,664,474,814
사업수행비용	61300	기타직보수		953,000,000			953,000,000
사업수행비용	61400	일용임금		8,887,080			8,887,080
사업수행비용	61500	강사로		439,411,260			439,411,260
사업수행비용	61600	퇴직급여		63,017,045			63,017,045
사업수행비용	61700	복리후생비		74,401,110			74,401,110
사업수행비용	61800	교육훈련비		364,800			364,800
사업수행비용	62100	임차료비용			183,654,476		183,654,476
사업수행비용	63010	여비교통비				523,078,398	523,078,398
사업수행비용	63011	국내여비					146,805,953
사업수행비용	63012	국외여비					264,884,341
사업수행비용	63020	소모품비				301,579,391	301,579,391
사업수행비용	63030	수수료비용				351,442,600	351,442,600
사업수행비용	63060	보험료				7,889,910	7,889,910
사업수행비용	63070	차량유지비				99,978	99,978
사업수행비용	63080	피복비				103,234,990	103,234,990
사업수행비용	63100	광고선전비				9,046,000	9,046,000
사업수행비용	63180	업무추진비				28,525,300	28,525,300
사업수행비용	63190	기타운영비				11,246,441	11,246,441
사업수행비용	64200	고유목적사업비용	1,193,905,741				1,193,905,741

3. 운영성과표 > 분배비용

분배비용은 공익법인이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비용으로 장학금, 지원금 등을 포함한다. 수혜자나 수혜단체는 공익목적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게 되는 개인 및 단체를 의미한다. 분배비용은 공익법인의 사업수행목적으로 직접 지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반관리비용이나 모금비용에서는 발생할 수 없고 **사업수행비용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

(사례 3-7) 분배비용

2x18년 10월 1일 장학 사업을 위해 1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개인당 1,000,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2x18년 12월 1일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5,000,000원의 쌀을 구입하여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찾아 지급하였다.

< 2x18. 10. 1 >

(차) 사업수행비용(분배비용)	10,0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0
------------------	------------	--------------	------------

< 2x18. 12. 1 >

(차) 재 고 자 산	5,0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5,000,000
-------------	-----------	--------------	-----------

(차) 사업수행비용(분배비용)	5,000,000	(대) 재 고 자 산	5,000,000
------------------	-----------	-------------	-----------

3. 운영성과표 > 인력비용

인력비용은 공익법인에 고용된 인력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한다. 아래에 설명하는 것은 예시이므로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용된 인력과 관련된 비용은 인력비용으로 분류한다.

- ① **급여** :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각종 수당을 의미함
- ② **퇴직급여** :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시 발생하는 비용 계정임
- ③ **복리후생비**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기념품비, 행사지원비, 문화여가비, 사회보험 회사부담금(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을 의미함
- ④ **교육훈련비** :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함

3. 운영성과표 > 시설비용

시설비용은 공익법인의 운영에 사용되는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시설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시설보험료, 시설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한다. 아래에 설명하는 것은 예시이므로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익법인의 운영에 사용되는 시설과 관련된 비용은 시설비용으로 분류한다.

- ① **감가상각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인식한 금액을 의미함
- ② **지급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등의 임차료를 의미함
- ③ **시설보험료** : 건물, 구축물 등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 및 차량운반구에 대한 보험 등 시설과 관련한 보험료를 의미함
- ④ **시설유지관리비** :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시설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함
- ⑤ **무형자산상각비** : 시설과 관련된 무형자산(전산시스템 등)의 상각대상금액을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인식하는 금액을 의미함

3. 운영성과표 > 기타비용

기타비용은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이외 비용으로서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용역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대손상각비 등을 포함한다.

- ① **여비교통비** : 국내출장 및 해외출장 여비 등을 의미함
- ② **소모품비** : 소모용 물품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함
- ③ **지급수수료** : 업무대행수수료, 법정수수료 등 외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의미함
- ④ **용역비** : 특정 과제수행이나 조사, 연구 및 행사 운영·진행 등을 위해 외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함
- ⑤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접대비, 업무협의, 간담회 등 공익법인의 업무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함
- ⑥ **대손상각비** :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면서 이에 대한 상대계정으로 대손상각비를 인식함. 미수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의미함
- ⑦ **무형자산상각비** : 시설과 관련되지 않은 무형자산(지식재산권, 개발비 등)의 상각대상금액을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인식하는 금액을 의미함

4. 주식사항

○ 주식서류 직접 작성

도움말

주식서류명	주식 작성하기	해당없음 여부
·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 (작성대상) 기본재산, 담보설정 등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보유한 공익법인	주식 작성하기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차입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의 주요 내용 (작성대상) 차입금[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이 있는 공익법인(사채제외)	주식 작성하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없음
· 현물기부의 내용 (작성대상) 현물로 기부받은 자산이 있는 공익법인	주식 작성하기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제공한 담보·보증의 주요 내용 (작성대상) 차입금에 대한 담보제공자산, 질권설정 및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등 담보를 제공하고 있는 공익법인	주식 작성하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없음
·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 (작성대상)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공익법인	주식 작성하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없음
·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용, 소송금액, 진행 상황 등 (작성대상) 회계연도 말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공익법인	주식 작성하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없음
·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 (작성대상) 기본순자산이 있는 공익법인	주식 작성하기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내역

작성요령 동영상보기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보유내역 중 사용이 제한(담보설정, 기본재산 등) 된 내역을 작성합니다.
(주의) 특정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한 자산(예:보조금, 용도제한 기부금 등)의 경우 사용제한에 포함시킬 필요 없음

○ 보유내역

(단위: 원) 초기화 도움말

· 계정과목	현금및현금성자산	· 종류	정기예금
· 당기말 금액	2,642,304,856	· 전기말 금액	2,642,304,856
· 사용제한 내용	대한체육회 질권설정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 비교

작성요령 동영상보기

당기말 현재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를 작성 합니다.

○ 기본순자산 관련 내역

(단위: 원) 초기화 도움말

· 기본순자산 구분	예적금	· 취득원가	2,642,304,856
· 공정가치 평가여부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부	· 공정가치금액	0
비고	해당없음		

현물기부의 내용

작성요령 동영상보기

당기와 전기에 현물(현금제외)로 기부받은 자산의 내역을 작성합니다.

○ 현물 내역

(단위: 원) 초기화 도움말

· 대표 기부자(법인명)	(주)비와이엔블랙야크		
· 현물 내역	국가대표의류후원		
· 당기기부금수익금액	420,306,910	· 전기기부금수익금액	0
· 당기기본순자산	0	· 전기기본순자산	0

등록하기

○ 소송내역

(단위: 원) 초기화 도움말

· 소송법원		· 소송구분	<input type="radio"/> 원고 <input type="radio"/> 피고
· 소송상대방명		· 소송가액	
· 소송사건명			
진행상황			

5. 재무현황

재무현황 및 자산현황

작성요령 동영상보기

자동재용실행하기

○ 재무현황

(단위 : 원)

구분	㉠총계 (㉠=㉡+㉢)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18) 총자산가액	3,530,443,284	3,530,443,284	0
(19) 부채	226,403,968	226,403,968	0

• 순자산

구분	㉠총계 (㉠=㉡+㉢)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21) 소계	3,304,039,316	3,304,039,316	0
(22) 기본순자산	2,642,304,856	2,642,304,856	0
(23) 보통순자산	661,734,460	661,734,460	0
(24) 순자산조정	0	0	0

○ 자산현황

(단위 : 원)

구분	㉠총계 (㉠=㉡+㉢)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25) 총자산가액	3,530,443,284	3,530,443,284	0
(26) 토지	0	0	0
(27) 건물	0	0	0
(28) 주식 및 출자지분			
(29) 금융자산	3,418,291,998	3,418,291,998	
(30) 기타자산	112,151,286	112,151,286	

6. 수익현황 & 비용현황

수익현황, 비용현황(표준서식)

작성요령 동영상보기 **자동재음실행하기**

○ 수익현황

(단위 : 원)

구분	◎총계 (◎=◎+◎)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31) 총계	5,806,290,639	5,806,290,639	0

• 사업수익

구분	◎총계 (◎=◎+◎)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33) 소계	5,580,883,271	5,580,883,271	0
(34) 기부금	1,129,267,207	1,129,267,207	
(35) 보조금	4,187,546,082	4,187,546,082	
(36) 회비수익	0	0	
(37) 기타	264,069,982	264,069,982	0

구분	◎총계 (◎=◎+◎)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38) 사업외수익	44,195,035	44,195,035	0
(39)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환입액	181,212,333	181,212,333	0

○ 비용현황

(단위 : 원)

구분	◎총계 (◎=◎+◎)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40) 총계	5,626,151,040	5,626,151,040	0

• 사업비용

구분	◎총계 (◎=◎+◎)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42) 소계	5,444,938,707	5,444,938,707	0
(43) 사업수행비용	4,679,474,814	4,679,474,814	
(44) 일반관리비용	765,463,893	765,463,893	
(45) 모금비용	0	0	
(46) 기타	0		0

구분	◎총계 (◎=◎+◎)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47) 사업외 비용 등 기타	0	0	0
(48)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액	181,212,333	181,212,333	0

7.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감사보고서의 운영성과표 기준으로 등록함. 4개까지 등록가능하기 때문에, 금액이 큰 사업순으로 등록

사업현황

(1)장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현황

제조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신장하는 한편 경기전 및 협회에 속한 조직을 총괄 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국위 신장 도모

* (2)사업내용

<input type="checkbox"/> 문화예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스포츠	<input type="checkbox"/> 기타 레크리에이션 및 봉사 활동
<input type="checkbox"/> 초등 및 중등 교육	<input type="checkbox"/> 고등교육	<input type="checkbox"/> 기타교육
<input type="checkbox"/> 학술연구	<input type="checkbox"/> 장학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
<input type="checkbox"/> 병원 및 재활시설	<input type="checkbox"/> 요양원	<input type="checkbox"/> 정신 건강 및 위기예방
<input type="checkbox"/> 기타 보건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	<input type="checkbox"/> 건강생활 및 구호
<input type="checkbox"/> 소독 지원 및 보존	<input type="checkbox"/> 환경	<input type="checkbox"/> 동물
<input type="checkbox"/> 경제, 사회 및 지역사회개발	<input type="checkbox"/> 주거	<input type="checkbox"/> 고용 및 훈련
<input type="checkbox"/> 시민 및 청소년	<input type="checkbox"/> 법률 및 법률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정치단체
<input type="checkbox"/> 배부(지원) 재단	<input type="checkbox"/> 봉사조직	<input type="checkbox"/> 유공활동
<input type="checkbox"/> 국제활동	<input type="checkbox"/> 종교단체 및 종교 관련 단체	<input type="checkbox"/> 비자니스연합
<input type="checkbox"/> 전문가연합	<input type="checkbox"/> 노년조합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사업내용

* (3)사업대상

모두 해당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다문화) 가족, 여성 일반대중 기타 사업대상

* (4)국내 주요 사업지역

<input type="checkbox"/> 전국	<input type="checkbox"/> 서울	<input type="checkbox"/> 부산
<input type="checkbox"/> 인천	<input type="checkbox"/> 대전	<input type="checkbox"/> 광주
<input type="checkbox"/> 대구	<input type="checkbox"/> 울산	<input type="checkbox"/> 강원
<input type="checkbox"/> 세종	<input type="checkbox"/> 경기	<input type="checkbox"/> 경남
<input type="checkbox"/> 경북	<input type="checkbox"/> 충남	<input type="checkbox"/> 충북
<input type="checkbox"/> 전남	<input type="checkbox"/> 전북	<input type="checkbox"/> 제주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국내지역)		

* (5)국외 주요 사업지역

<input type="checkbox"/> 전세계	<input type="checkbox"/> 유럽	<input type="checkbox"/> 아시아
<input type="checkbox"/> 북아메리카	<input type="checkbox"/> 남아메리카	<input type="checkbox"/> 아프리카
<input type="checkbox"/> 오세아니아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국외지역)	

6)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

(단위 : 원, 개)

1	코드	검색	1200	스포츠	초기화	
	사업명	국내대회			사업수행비용	634,942,390
사업내용	전국종별체조선수권대회, 소년체육대회, 리틀체조대회				사업지역	전국
2	코드	검색	1200	스포츠	초기화	
	사업명	국내훈련			사업수행비용	2,536,157,460
사업내용	국가대표, 꿈나무, 전일감독, 국가대표수당, 감독수당등				사업지역	전국
3	코드	검색	1200	스포츠	초기화	
	사업명	국제훈련			사업수행비용	354,186,802
사업내용	국가대표해외전지훈련				사업지역	해외등
4	그 외 사업 개수			47	사업수행비용	1,139,188,162
합계	총 공익목적 사업개수			50	사업수행비용 합계	4,664,474,814

사업코드	사업명	사업구분	사업비용코드 및 명칭
11010	국토정중앙배전국초등학교체조대회	국내대회	60110 국내대회
11020	전국종별체조선수권대회	국내대회	60110 국내대회
11030	전국소년체육대회	국내대회	60110 국내대회
11040	회장배전국리틀체조대회	국내대회	60110 국내대회
11050	KBS배전국기계체조대회	국내대회	60110 국내대회
11060	교보생명합꿈나무체조대회	국내대회	60110 국내대회
11070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전국체조대회	국내대회	60110 국내대회
11080	전국체육대회	국내대회	60110 국내대회
11090	KBS배전국리틀체조대회	국내대회	60110 국내대회
11100	전국종합선수권대회	국내대회	60110 국내대회
11110	꿈나무리틀체조대회	국내대회	60110 국내대회
11120	파쿠르대회	국내대회	60110 국내대회
11130	전국체육대회경기운영부지원사업	국내대회	60110 국내대회
11140	전국체육대회심판보상비	국내대회	60110 국내대회
11150	대한체육회장기생활체육전국체조대회	국내대회	60110 국내대회
11160	전국소년체육대회심판운영비	국내대회	60110 국내대회
12010	FIG기계종목별월드컵	국제대회	60120 국제대회
12020	시니어주니어아시아선수권	국제대회	60120 국제대회
12030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국제대회	60120 국제대회
12040	리틀세계선수권	국제대회	60120 국제대회
12050	기계세계선수권	국제대회	60120 국제대회

60000	사업비용	5,444,938,707
60010	사업수행비용	4,664,474,814
60110	국내대회	634,942,390
60120	국제대회	113,959,891
60210	국내훈련	2,536,157,460
60220	국제훈련	354,186,802
60300	기타사업	1,025,228,271

8.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

작성요령 동영상보기
(단위:원) 자동재용실행하기

구분	사업연도(과세기간)	
	당기	전기
1. 사업수익	5,580,883,271	6,084,108,831
1) 기부금품	1,129,267,207	1,312,280,000
(1) 개인기부금품	102,521,000	0
(2) 영리법인기부금품	1,026,746,207	1,312,280,000
(3) 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등의 지원금품		0
(4) 기타기부금품		0
* 기부물품 (1)-(4)에 포함된 기부물품	당기 130,267,207	전기 0
2) 보조금	4,187,546,082	4,642,140,016
3) 회비수익	0	0
4) 기타공익목적사업수익	264,069,982	129,688,815
2. 사업외 수익	44,195,035	11,730,650
3.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환입액	181,212,333	0
4. 총 합계 (1+2+3)	5,806,290,639	6,095,839,481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

(단위:원)

구분	사업연도(과세기간)				
	당기				전기
	합계	사업 수행비용	일반 관리비용	모금 비용	
1. 사업비용	5,444,938,707	4,679,474,814	765,463,893	0	5,911,799,479
(1) 분배비용(장학금, 지원금 등 수혜자(단체)에게 직접 지급비용)	1,193,905,741	1,193,905,741	0	0	0
1) 국 내	1,193,905,741	1,193,905,741			0
2) 국 외	0				0
(2) 인력비용	2,066,962,402	1,539,081,295	527,881,107	0	603,909,198
(3) 시설비용	218,952,996	183,654,476	35,298,520	0	13,574,460
(4) 기타비용	1,965,117,568	1,762,833,302	202,284,266	0	5,294,315,821
2. 사업외비용	0				24,898,902
3. 고유목적사업 준비금환입액	181,212,333				0
4. 총 합계 (1+2+3)	5,626,151,040				5,936,698,381

	구분	월	일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용금액
1	현금	1월	2025.01.08.	(주)더블유이엔지		500,000
2	현물	1월	2025.01.21.	최효선 (미라클영상의학과의원)		65,000,000
3	현물	1월	2025.01.22.	윙크슬립		23,840,000
4	현금	2월	2025.02.04	(주)포스코이앤씨		900,000,000
5	현물	5월	2025.05.19.	최효선 (미라클영상의학과의원)		37,521,000
6	현금	5월		스노볼아이엔씨 주식회사		27,000,000
7	현물	7월	2025.07.01.	(주)대연		3,306,207
8	현금	7월	2025.07.30	교보생명(주)		60,000,000
9	현물	8월	2025.08.17.	연세척마취통증의학과의원		600,000
10	현금	12월	2025.12.10.	현대체육산업(주)		10,000,000
11	현금	12월	2025.12.17.	(주)태인		1,500,000
합 계						1,129,267,207
				현물	130,267,207	
				현금	999,000,000	
				개인	102,521,000	
				영리법인	1,026,746,207	

9.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

기타사업이 없는 경우, 아래양식은 작성하지 아니함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

[작성요령 동영상보기](#)

○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

(단위:원) [자동채움실행하기](#)

구분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
(1) 합계	377,092,112	400,124,257	-23,032,145

• 금융

구분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
(2) 소계	0	0	0
(3) 이자	0		0
(4) 배당	0		0
(5) 기타금융	0	0	0

• 부동산

구분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
(6) 소계	0	0	0
(7) 임대	0	0	0
(8) 매각	0	0	0

• 기타사업손익

구분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
(9) 기타	358,890,919	396,026,883	-37,135,964
(10) 사업외손익	18,201,193	4,097,374	14,103,819
(11)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전입)	0	0	0

10. 출연받은재산의 사용명세서

구분	출연재산	기부금
개념	법인 설립 시 또는 정관 목적사업을 위해 무상으로 이전하는 재산	사업과 무관하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품
근거법	상속세및증여세법 §48	법인세법 §24, 소득세법 §34
수령 주체	공익법인(재단·사단법인 등)	지정기부금단체, 법정기부금단체 등
증여세	요건 충족 시 증여세 비과세	해당 없음
세제혜택	상증세 과세가액 불산입	손금산입 한도 내 공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

-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및 사용명세를 작성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이 완료되지 않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내역 (해당 사업연도 사용분)을 작성합니다.
- 출연재산별로 출연일이 빠른 순서로 입력합니다.

사용명세 작성하기 >

출연자

- 설립시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기부)한 출연자에 대해 작성합니다.
- 재산 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장부가액 기준)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을 출연한 자는 제외합니다.

출연자 작성하기 >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에 대하여 출연받은 사업연도부터 사용이 완료되는 사업연도까지 매년 작성합니다.

공익목적사용 작성하기 >

수익(사업)용 출연재산 공익목적 의무사용 현황

- 총자산가액이 5억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이상인 공익법인 등 및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 등은 매년 의무사용 현황을 작성합니다.

공익목적의무사용 작성하기 >

10.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1번항목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작성요령 동영상보기

- 출연재산은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전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및 사용명세, 그리고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용이 완료되지 아니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해당 사업연도 사용분)를 작성하며, 출연재산별로 출연일이 빠른 순으로 적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사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금년도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에 적지 않습니다.
예) 2022년 또는 2023년에 받은 기부금을 2023년말까지 전액 사용하였다면 명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2023년말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남아 있다면 2024년 사용분에 대해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 연간 50만원 이상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출연자별로 작성하되, 개인별로 연간 50만원 미만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출연자명을 '소액계'로 하고 개인별 금액을 합하여 작성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제외)
- 출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기명자를 선택하고 출연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출연자란에 입력한 후 현금, 토지 등 출연재산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출연받은 재산

초기화

* (6)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확인

* (5) 출연자명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재산종류	출연일자	출연자명	내.외국인 무기명 구분	출연자주민번호 (사업자번호)	출연재산수량	출연재산가액	사용금액		사용처	미사용금액
							직전년도까지	해당년도		
01	2025-01-08	(주)더블유이엔지	0			500,000		500,000	2025 중고체조연맹대회 운영지원	0
10	2025-01-21	최효선	0			65,000,000		65,000,000	2026 국가대표(남,여,리듬)물품 지급	0
10	2025-01-22	윙크슬립	0			23,840,000		23,840,000	2025 체조인의밤 경품지급 및 대표선수단 물품전달	0
01	2025-02-04	(주)포스코이엔씨	0			900,000,000		900,000,000	2월: 협회운영비(인건비,행정비): 3억 7월: 국내 국제대회(우연비): 4억	0
10	2025-05-19	최효선	0			37,521,000		37,521,000	2026 국가대표(남,여,리듬)물품 지급	0
01	2025-05-31	스노볼아이엔씨 주식회사	0			27,000,000		27,000,000	2025 회계,인사로그림 지원	0
10	2025-07-01	(주)대연	0			3,306,207		3,306,207	2025 아시아선수권대회 경기요원 단복	0
01	2025-07-30	교보생명(주)	0			60,000,000		60,000,000	2025 교보생명컵대회 지원금	0
10	2025-08-17	연세척마취통증의학과의원	0			600,000		600,000	2025 중고체조연맹 대회 지원비	0
01	2025-12-10	현대체육산업(주)	0			10,000,000		10,000,000	2025 국내대회 훈련용기구 지원	0
01	2025-12-17	(주)태인	0			1,500,000		1,500,000	2025 태인장학금 지원	0

등록하기

출연재산가액 등 합계

전체삭제 -

선택내용삭제 -

엑셀 불러오기

엑셀서식 내려받기

전자자료 불러오기

10.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2번항목

출연자

작성요령 동영상보기

○ 설립시 출연자(기부자)

(단위 : 원) 초기화

*성명(법인명)	<input type="text"/>
*주인(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무기명자
*출연재산종류	-선택-
*출연가액	<input type="text"/>
비고	<input type="text"/>

등록하기

전체내용삭제 - 선택내용 삭제 - 출연자 엑셀 불러오기 엑셀서식 내려받기 ↓ 저기자료 불러오기

<input type="checkbox"/>	번호	성명	주인(사업자) 등록번호	출연	<input type="checkbox"/>	번호	성명	주인(사업자) 등록번호	출연재산 종류	출연가액	비고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조회된 결과 1 총 1건 </div>											
<input type="checkbox"/>		교보생명(주)			<input type="checkbox"/>				현금	60,000,000	
<input type="checkbox"/>		스노볼아이엔씨주식...			<input type="checkbox"/>				현금	27,000,000	
<input type="checkbox"/>		(주)포스코이앤씨			<input type="checkbox"/>				현금	900,000,000	
<input type="checkbox"/>		최효선			<input type="checkbox"/>				기타	102,521,000	
<input type="checkbox"/>		윙크슬림			<input type="checkbox"/>				기타	23,840,000	

○ 당해사업년도 출연자(기부자)

*성명(법인명)	<input type="text"/>
*주인(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출연재산종류	-선택-
*출연가액	<input type="text"/>
비고	<input type="text"/>

등록하기

전체내용삭제 - 선택내용 삭제 - 출연자 엑셀 불러오기 엑셀서식 내려받기 ↻ **자동재용실행하기**

<input type="checkbox"/>	번호	성명	주인(사업자) 등록번호	출연재산 종류	출연가액	비고
--------------------------	----	----	--------------	---------	------	----

당해사업년도 출연자(기부자)에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에서 당해년도에 출연한 금액이 20,000,000원 이상인 출연자를 조회하였습니다.
확인 후 저장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10.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3번항목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작성요령 동영상보기

○ 출연재산 명세

도움말 초기화

* (3) 출연받은 사업연도 2025 년 01 월 ~ 2025 년 12 월

* (4) 출연재산종류 -선택- * (6) 출연재산가액

○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합계	직접공익목적	수익사업
전기 사업연도까지의 사용금액	(7)	(8)	(9)
해당 사업연도 사용금액	(10)	(11)	(12)

○ 미사용내역

(단위:원)

(13) 미사용금액 ((6)-(7)-(10))

(14) 미사용 사유 또는 사용계획

등록하기

전체내용삭제 -

선택내용 삭제 -

자동재용실행하기

번호	사업연도		출연재산		전기 사업연도까지의 사용금액		
	시작년월	종료년월	종류	가액	합계	직접공익목적	수익
1	2025-01	2025-12	현금	999,000,000	0	0	
2	2025-01	2025-12	기타	130,267,207	0	0	

10.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4번항목

수익용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의무사용 현황

작성요령 동영상을보기

○ 공익목적 의무사용 현황

(단위:원) [도움말](#)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			④의무사용 출연재산대상가액 [①-(②+③)]	⑤사용기준 금액 (④ * 1%,3%)	⑥사용실적 (⑧,⑬ 중 큰 금액)	⑦ 과부족액 (⑥ -⑤)
①총자산가액	②부채가액	③당기순이익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

○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 ⑥사용실적란에 최근 5개년 평균금액을 기재하는 경우에만 작성

(단위:원)

구분	⑧ 해당 사업연도	⑨ 1년 전 사업연도	⑩ 2년 전 사업연도	⑪ 3년 전 사업연도	⑫ 4년 전 사업연도	⑬ 5년간의 평균 (⑧~⑫의 평균)
사용실적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수익(사업)용 출연재산 공익목적 의무사용 현황

- 가.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 및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이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현황을 작성합니다.
- 나. ①~④까지의 란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직전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단, 재무상태표상 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100분의 70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재함).
- 다. ⑤사용기준금액란은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과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④의무사용 출연재산대상가액에 1%를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3%를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라. ⑥사용실적란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에 사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11.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현물로 받은 출연재산(기부금) 또는 출연재산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자산을 매각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작성함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내에 재산을 매각한 경우로서 매각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이후 3년 동안 매년 작성합니다.

사용명세
작성하기



출연재산 매각대금 지출명세서

- 해당사업연도에 수혜자, 자산취득, 운용경비 등에 지출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지출명세
작성하기



12. 운용소득사용명세서

기부받은 현금을 예금에 예치하고 이자수익이 발생한 경우 또는 부동산등으로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작성함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 전년도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운용소득을 작성합니다.

사용명세
작성하기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지출명세서

· 해당사업연도에 수혜자, 자산취득, 운용경비 등에 지출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지출명세
작성하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작성요령 동영상보기

- 전년도 운용소득을 사용한 실적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운용소득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 (1)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직전 사업연도에 제출한 이 서식의 「(27)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2) 사용기준액: (3)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금액에 80%를 곱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22.1.1. 전 개시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일반공익법인 70%(상실공익법인80%)적용
- (3) 1년내 사용실적: 각 사업연도 중 다음의 사용실적을 합하여 적용합니다.
 - 정관으로 정한 공익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데 소요된 비용
 - 정관으로 정한 공익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비용
 - 정관으로 정한 공익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인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한 비용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법인 등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인건비를 지급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인건비로 보지 않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적용한다)
 -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한 이 서식의 「(27)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금액에 「(15)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 ※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운용소득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4) 과부족액: 1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실적이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여 (6)과부족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5년간 평균 실적을 계산하기 위해 (8)-(12)란을 작성합니다.

○ 전년도 운용소득 사용실적

(단위 : 원) [도움말](#) [전기자료 불러오기](#)

번호	(5) 해당 사업연도	(6) 1년 전 사업연도	(7) 2년 전 사업연도	(8) 3년 전 사업연도	(9) 4년 전 사업연도	(10) 5년간 평균 (5) - (9) 의 평균
(1)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0	0	0	0	0	0
(2) 사용기준액 (1) × 80/100	0	0	0	0	0	0
(3) 1년내 사용실적	0	0	0	0	0	0
(4) 과부족액 (3) - (2)	0	0	0	0	0	0

○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단위 : 원)

(11) 수익사업등의 소득금액	0
------------------	---

· 가산액

(12)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0	(13) 고유목적사업지출손금산입금액	0
(14) 기타	0	(15) 소계 (12) + (13) + (14)	0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지출명세서

· 운용소득지출구분	-선택-		
· 지출목적 구분	-선택-		
· (2)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확인"/>	· (1)(대표)지급처명 (성명/상호) <input type="text"/>
· (3)지출목적	<input type="text"/>		
· (4)수혜인원(단체) 수 지급처 수(명/개)	<input type="text"/> 명/개	· (6)현금 지출액	<input type="text"/> 원
· (7)물품 지출액	<input type="text"/> 원	· (8)지출액 합계	<input type="text"/> 0 원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번호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29)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란에 SSSSSS-SSSSSSS(SSS-SS-SSSSS)로 입력하면 됩니다.

[등록하기](#)

[도움말](#)

[전체삭제](#)

[선택내용삭제](#)

[엑셀 불러오기](#)

[엑셀서식 내려받기](#)

<input type="checkbox"/>	번호	운용소득지출명세서구분	지출목적구분	(1)(대표)지급처명 (성명/상호)	(2)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3)지출목적	(4)수혜인원 (단체) 수 지급처 수
조회된 결과가 없습니다.							

13.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10. 출연받은재산의사용명세서: 3번항목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과 동일한 내용임

○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초기화

* 입력구분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

• 사용계획

* (3) 출연(운용, 매각) 사업연도 종료년월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월	* (4) 재산종류	<input type="text"/> 재산종류 선택
* (5) 용도	<input type="text"/>		
* (6) 사용시작일 ~ (7) 사용종료일	<input type="text"/> yyyy-mm-dd ~ <input type="text"/> yyyy-mm-dd	(8) 금액	<input type="text"/> 원
(9) 해당연도 의무 사용 기준금액	<input type="text"/> 원 ⓘ 출연재산 : (8)과 동일 운용소득 : (8)×80/100 매각대금 : (8)×30(60, 90)/100		

• 사용내역

(10) 직전 사업연도 까지의 사용금액	<input type="text"/> 원	(11) 해당년도 사용금액	<input type="text"/> 원
(12) 계 (10) + (11)	<input type="text"/> 원		
(13) 기준미달 사용금액 (9) - (12)	<input type="text"/> 원		

등록하기

선택내용삭제 -

자동재음실행하기

<input type="checkbox"/>	번호	구분	사업연도	재산종류	재산종류명	용도	사용시작일	사용종료일	금액
<input type="checkbox"/>		출연재산	2025-12	01	현금	2025중고체조연맹대회은...	2025-01-08	2028-01-08	999
<input type="checkbox"/>		출연재산	2025-12	10	기타	2025국가대표(남,여,리듬)...	2025-01-21	2028-01-21	130

14. 주식 등의 출연 · 취득 · 보유 및 처분 명세서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작성(주식지분율이 5%초과)

주식 등의 출연 · 취득 · 보유 및 처분 명세서

작성요령 동영상보기

○ 주식등의 보유 현황 및 보유비율 및 보유주식 변동사항

주식등의 보유 현황 및 보유비율

-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보유주식수, 주가가액, 보유경위, 배당현황 등을 작성합니다.
-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발행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 작성합니다.

주식등의 보유 현황
작성하기

보유주식 등 변동사항

- 공익법인이 취득(출연 포함)하거나 처분(재출연 포함)한 주식의 변동일자, 사유, 변동주식수, 주가가액 등을 작성합니다.

보유주식 변동 사항
작성하기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결과

-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이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주식명, 의결권 행사일,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 수 및 비율을 적습니다.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결과 작성하기

○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원, %)

(1)자산총액	3,530,443,284	비고
(2)취득가액	0	
(3)장부가액	0	
(4)((2),(3)중 적은 금액)	0	
(5)비율 ④÷(①-③+④)	0.00	

16.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 기부금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을 설정하고 해당사업에서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해야 함.
- 기부금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것을 대상으로 하여,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것은 법인판단하에 국세청에서 신고
- 차후, 국세청이 기부자가 신고한 기부금과 법인이 신고한 기부금수입내역을 대사함
- 법인신고 기부금수입금액 > 기부자신고내역이면, 문제가 되지 않음

- 「공익법인회계기준」의 기부금 수익인식 방법에 따라 작성합니다.
 - 예) • 현금·현물을 기부 받은 경우→실제 기부받는 시점,
 - 가상계좌, CMS, 지로, 신용카드 등 납부방법으로 기부받은 경우
 - 기부 결제시점(기부금 납부, 출금요청, 신용카드 승인시점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기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 수입란, (3) 지출 :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 기본순자산 편입액: 당해연도에 기부(출연)받은 금액 중 기부금수익으로 계상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직접 반영되는 기부금(출연금)을 적습니다.
 - 기본순자산 증가로 회계처리: (차) 현금 xxx (대) 기본순자산 xxx
 - 자본계정
 - 수익으로 회계처리: (차) 현금 xxx (대) 기부금수익 xxx → 손익계정
- 차가감계 :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전체 수입(기본순자산 편입액 차감) 및 지출금액을 적습니다.

○ 기부금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원) [도움말](#)

(1)월별	(2)수입	(3)지출	(4)잔액	(1)월별	(2)수입	(3)지출	(4)잔액
전기 이월	-	-	0	2025/09월	0	200,000,000	0
2025/01월	89,340,000	89,340,000	0	2025/10월	0	0	0
2025/02월	900,000,000	300,000,000	600,000,000	2025/11월	11,500,000	11,500,000	0
2025/03월	0	0	600,000,000	2025/12월	0	0	0
2025/04월	0	0	600,000,000	합계	1,129,267,20	1,129,267,20	
2025/05월	64,521,000	64,521,000	600,000,000	기본순자산 편입액	0	0	
2025/06월	0	0	600,000,000	차가감계	1,129,267,20	1,129,267,207	
2025/07월	63,306,207	400,000,000	263,306,207	차기 이월	-	-	0
2025/08월	600,000	63,906,207	200,000,000				

과목코드	과 목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10000	I. 사업수입	5,580,883,271	5,580,883,271	0
11000	1. 기부금수익	1,129,267,207	1,129,267,207	0

◎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공익법인회계기준」의 기부금 수익인식 방법에 따라 작성합니다.

- 예) • 현금·현물을 기부 받은 경우→실제 기부받는 시점,
 - 가상계좌, CMS, 지로, 신용카드 등 납부방법으로 기부받은 경우
 - 기부 결제시점(기부금 납부, 출금요청, 신용카드 승인시점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기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수입란, (3) 지출: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 기본순자산 편입액: 당해연도에 기부(출연)받은 금액 중 기부금수익으로 계상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직접 반영되는 기부금(출연금)을 적습니다.
 - 기본순자산 증가로 회계처리: (차) 현금 xxx (대) 기본순자산 xxx
 - 자본계정
 - 수익으로 회계처리: (차) 현금 xxx (대) 기부금수익 xxx → 손익계정
- 차가감계: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전체 수입(기본순자산 편입액 차감) 및 지출금액을 적습니다.

16.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 해당 사업연도 중 국내에서 수혜자(수혜단체), 자산취득, 운영경비 등에 기부금품 내역을 작성합니다.
- 기부금 지출은 ①수혜자(수혜법인)에 지출, ②자산 취득에 지출, ③운영경비에 지출한 것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국내사업)

(단위 : 원) 다음말 초기화

* 지출목적 구분	-선택-		
(2)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 (1) (대표) 지급처명 (성명 / 단체명 / 상호)	
* (3) 지출목적			
* (4) 수혜인원(단체) 수 지급처 수 (명/개)		(6) 현금 지출액	
(7) 물품 지출액		(8) 지출액 합계	

등록하기

전체삭제 - 선택내용삭제 - **엑셀 불러오기** **엑셀서식 내려받기** ↓

☐	번호	지출목적구분	(대표)지급처명 (성명 / 단체명 /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수혜인원(단체) 지급처 수	지출액		
							현금	물품	합계
☐	1	운영경비에 지출	대*****	215-82-02057	인건비	301	300,000,0...	0	300,000,0...
☐	2	수혜자(수혜단체)에게 ...	체****	215-82-02057	중고체조연맹대...	1	500,000	0	500,000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지출목적구분	(대표)지급처명 (성명 /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수혜인원 (단체) 수 (명/개)	지출액		
					현금	물품	합계
3	대한체조협회임직원등		인건비	301	300000000		300000000
1	체조선수등		중고체조연맹대회 운영지원	1	500000		500000
1	체조선수등		국가대표(남,여,리듬)물품 지급	70		65000000	65000000
1	체조선수등		체조인의반 경품지급 및 대표선	70		23840000	23840000
1	체조선수등		국가대표(남,여,리듬)물품 지급	70		37521000	37521000
3	대한체조협회임직원등		지급수수료	70	27000000		27000000
1	체조선수등		아시아선수권대회 경기요원 단복	80		3306207	3306207
1	체조선수등		교보생명영대회 지원금	100	60000000		60000000
1	체조선수등		중고체조연맹 대회 지원비	50		600000	600000
1	체조선수등		국내대회 훈련용기구 지원	140	10000000		10000000
1	체조선수등		태인 장학금 지원	1	1500000		1500000
1	체조선수등		국내, 국제대회운영비	402	400000000		400000000
1	체조선수등		국내, 국제훈련비	205	200000000		200000000

◎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

기부금 지출은 ①수혜자(수혜법인)에 지출, ②자산 취득에 지출, ③운영경비에 지출한 것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가. 수혜자(수혜단체)에게 직접 지출

- (대표)지급처명(성명/단체명/상호): 사업연도기간 동안 수혜 받은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수혜자와 수혜단체의 경우 개별 수혜자(수혜단체)의 성명(수혜단체명)을 적습니다.
 - 연간 수혜 받은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수혜자와 수혜단체의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수혜단체명)을 적고 지출목적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지출목적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예시와 같이 작성합니다.
 - 예) ①미래인재개발 장학금, ②사회취약계층 자녀돌봄 및 학업지원, ③노인요양시설 의료지원 및 의약품 제공
- 수혜인원(단체) 수, 지급처 수(명/개): 지급된 지원금을 수혜 받은 인원 또는 단체 수를 적습니다.
 -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인적사항 대신 지출 사유를 간략히 적고, 수혜인원 추정 근거를 간략히 적습니다.
- 현금 지출액, (7)물품 지출액: 사업연도 기간 동안 지급처에게 지출한 금액을 현금지급과 물품지급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 운영경비에 지출하는 경우

- (대표)지급처명(성명/단체명/상호): 사업연도 기간 동안 지급목적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지출목적: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지출목적	각종 경비 지출									
	인건비	임차료	회비	요금비용	연구비	서금과공과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수선비	기타
- 수혜인원(단체) 수, 지급처 수(명/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각종 경비로 지출한 거액처 수를 적습니다.
- 현금 지출액, (7)물품 지출액: 사업연도 기간 동안 각종 경비로 지출한 금액을 현금지급과 물품지급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17. 세무확인서 & 단체인적사항

공익법인 세무확인서

작성요령 동영상보기

기본사항의 (51)세무확인여부가 "어"로 표시된 경우에 작성하며, 위반금액, 2명 이상 외부전문가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 후 해당되는 첨부서류의 종류를 눌러 작성합니다.

기본사항

* (6) 사업목적	기타
(8) 설립근거법	민법32조

자산보유현황 및 수익금액현황

자산보유현황

(9) 총자산가액	3,172,130,605 원		
자산종류별 (단위:원)			
(10) 토지	0	(11) 건물	0
(12) 예·적금 등 금융자산	3,081,328,859	(13) 주식·출자 지분 등	0
(14) 기타	90,801,746		

수익금액현황

(15) 총수익금액	2,233,199,632 원		
수익원천별 (단위:원)			
(16) 금융	0	(17) 부동산	0
(18) 기타수익사업	0	(19) 사업외손익	0
(20)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0	(21) 공익목적사업	2,233,199,632

세무확인결과

(22) 위반금액	0 원
(23) 외부전문가 종합의견	

단체 인적사항

·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 왼쪽 메뉴에서 다음 메뉴를 선택하고, 팝업이 뜨면 [확인]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종료] 메뉴 선택 시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연도	2025-01-01 - 2025-12-31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① 확인해야만 세무사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단체명	사단법인
* 대표자 성명	
기부금단체 지정일	① 기부금단체 지정일(종료일)은 기획재정부장관 지정기부금단체만 입력합니다. (당연지정기부금단체는 입력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부금단체 종료일	
* 기부금단체 구분	일반기부금단체
단체의 홈페이지 주소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
건물명(아파트,상가)	동 <input type="text"/> 층 <input type="text"/> 호 <input type="text"/>
*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구분	<input type="radio"/> 기획재정부장관지정기부금단체 <input checked="" type="radio"/> 당연지정기부금단체